

관세 채권 확보와 수입자 보호 제도에 관한 검토

2012.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영 관세사

김 수 영 관세사

양 지 영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추정 사례 검토	11
1. 스위스 금괴 사례	12
가. 사건 배경	13
나. 원산지 기준 및 세율 적용	14
다. 처벌 및 추정 내용	18
라. 본 사건의 시사점 및 문제점	19
2. 품목분류 논쟁-MCP(멀티칩 패키지) 사례	22
가. 사건 개요	23
나. MCP 품목 분류 논쟁	25
다. 사건 결과	28
라. 본 사건의 시사점	29
3. 기타 사례	30
가. 원산지증명서의 착오 기재 사례	30
나. 원산지 증명의 불충분 사례	34
III. 주요국의 담보제도	38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38
가.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38
나. 미국의 관세담보제도	44

다. EU의 담보제도	53
라. 영국의 담보제도	58
마.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63
IV. 수입자 보호 관련 제도 검토	66
1. 관세사 책임 보험	66
가. 제도 개관	67
나. 현행 규정과 문제점	71
다. 보완방안	72
2. 관세법 규정 검토	72
가. 외국의 수입자 보호 규정	73
나.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가산세 등 감경규정	77
다. 성실한 납세자의 주의의무 명시	81
라. 보정신청 기간의 연장	83
3. FTA 관세특례법 규정 검토	85
가. 외국의 FTA 관련 수입자 보호 규정	85
나. FTA 원산지 증명 관련 벌칙 감경	90
다. FTA 이행 관련 신의성실원칙의 보완	93
라. 관세법과 FTA 특례법 간 벌칙 규정 형평성 조정	97
마.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도과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입 (2012년 세법 개정안)	100
V. 관세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104
1. 관세보험의 도입 필요성	104
가. 수입자 보호 측면	105
나. 관세채권 확보 측면	106

2.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108
가. 보증보험의 의의.....	108
나.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115
3.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119
가. 손해보험의 의의.....	119
나.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123
4. 검토 의견.....	131
VI. 결 론.....	135
참고자료.....	140
부록.....	142

표 목 차

〈표 II -1〉 국가별 금과 수입금액.....	13
〈표 II -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15
〈표 II -3〉 FTA 발효 전후 수입 금과(HS 7108.12)의 관세율.....	17
〈표 II -4〉 FTA 특혜관세 추정 현황.....	19
〈표 II -5〉 제8542호에 분류되는 전자집적회로.....	26
〈표 III-1〉 미국의 통관 절차.....	44
〈표 III-2〉 미국의 담보 제공 사유.....	48
〈표 III-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65
〈표 IV-1〉 이행보증보험, 공제와 배상책임보험 비교.....	69
〈표 IV-2〉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70
〈표 IV-3〉 미국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 수준.....	75
〈표 IV-4〉 미국 관세법 제1509조에 따른 처벌.....	75
〈표 IV-5〉 FTA 관세특례법상 처벌의 예.....	98
〈표 IV-6〉 유사 위반사항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의 처벌 및 과태료 비교.....	99
〈표 V -1〉 최근 5년간 기획 및 법인심사 추정금액.....	104
〈표 V -2〉 보증보험의 유형.....	113

그림 목차

[그림 II -1] 스위스 금괴 생산 · 거래도	17
[그림 V -1] Surety 계약 시 3자 관계	110

I. 서론

- 현행 신고납부제도 및 사후심사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며, 신고의 수리 후에는 심사를 통한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
 - 신속 통관과 물류적체 해소라는 장점 이면에,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도 추징 위험에 노출되어 수입자의 경영 활동에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추징은 비교적 장기간(관세부과 제척기간인 2년 또는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크며, 수입자가 이미 판매한 물품에 전가시키지 못한 세액이 자신의 특별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큼
- 수입자는 거액의 관세 등 추징으로 인해 장기간 과세관청과 대립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쪽의 의견으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첨예한 사안인 경우 심판에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음
- 통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자의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과세채권 확보와 더불어 수입자의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FTA 확대 적용으로 인한 오류 사례 증가 등으로 추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그러나 관세 행정에 있어 수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으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관세 추정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였음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채권 확보 수단 제도에 대한 비교를 위해 미국과 EU의 통관 담보 제도를 조사함
- 그리고 제Ⅳ장에서 수입자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 연구로 현행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상 특정 규정을 미국·EU와 비교해 보고, 보완방안과 그 외 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의 통관대리인인 관세사가 가입하여 수입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와 개선점에 대해 고찰함
 -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수입자 보호 측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검토함
- 또한 수입자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관세보험제도의 도입 문제를 현 실정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제도의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음
 - 관세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자와 과세권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계점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
 - 관세보험제도가 선진국에서 현행 운영 중인 보증증권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와 손해보험 형태로 도입될 경우를 나누어 가정해보고 각 형태별 특성과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검토함

Ⅱ. 추징 사례 검토

- 수입자는 FTA의 체결 확대 및 첨단 제품의 개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으로 관세 등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음
 -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출자의 주장만을 신뢰한 경우, 또는 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업계 관행이나 해외 사례를 따르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FTA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추징을 당한 스위스 금괴 사건과 IT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사건인 MCP 사건에 대해 살펴봄
 - 스위스 금괴 사건은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로, 결국 상대국 법원에서 스위스산으로 결정했으나 원산지 검증 회신 기간을 초과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함
 - MCP 사건은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과세관청과 업체 간 견해차이로 인한 품목분류 분쟁으로, 추징당했던 관세 등을 결국 업체가 되돌려 받게 된 사례임
 - 기타 사례로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 수입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FTA 협정 적용 배제로 추징당했던 사건을 소개함

1. 스위스 금괴 사례

- 한·EFTA¹⁾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스위스산 금괴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였음
 - EFTA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금괴(HS 7108.12)를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세율인 3% 대신 FTA 특혜세율인 0%가 적용되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추후 원산지 조사 결과, 스위스에서의 금괴 제조 공정이 본 원산지 규정에 불합치함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스위스로부터 수입해 온 금괴는 스위스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FTA 특혜세율(0%)을 적용받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 판정됨
- 한·EFTA FTA 발효 이후 최초 적발 사례인 본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금괴 수입업체들은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결국 그 중 2개의 업체는 추징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짐
- 부정행위로 판정된 지 약 2년 후, 스위스 당국 법원에 의해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이 최종 판결되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국내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회신기간 규정을 들어 추징을 취소하지 아니함
 - 스위스 법원의 판결에 2년이 소요되었으나, 관세당국은 상대국의 원산지 확인이 10개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²⁾에 근거하여 스위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음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 수출업자만을 믿고 거래한 다수의 국내 수입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임

가. 사건 배경

- ☐ 스위스산 금괴는 한·EFTA FTA 협정을 통해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본 협정의 발효 이후 그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금괴의 전체 수입금액은 2005년 대비 2007년 50% 증가한 데 반하여, 스위스산 금괴의 수입금액은 21배 이상 증가함

〈표 II-1〉 국가별 금괴 수입금액

(단위: 억원)

수출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2월 말)
홍콩	2,620	2,292	2,733	544
호주	2,231	1,160	1,370	306
스위스	181	250	3,870	556
카자흐스탄	367	599	585	0
기타	486	185	256	31
합계	5,885	4,486	8,814	1,437

주: 수입신고가격 기준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 ☐ 국내 수입업자들은 2006년 9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출자인 스위스 금 제조사가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율 0%를 적용하여 통관하였음
- ☐ 세관은 스위스산 금괴 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국내 수입자를 조사하는 한편, 수출국 관세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

여 수출자 · 생산자를 조사함

-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 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본 물품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음
 - HS 6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금괴의 원산지 규정상, 스위스 내 금괴 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HS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수입된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음

나. 원산지 기준 및 세율 적용

1) 원산지 기준

- FTA에서 정한 관세혜택을 수입 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해야만 함
- 통상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가(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 상공회의소 등 발급권한을 지닌 기관에서 발행(기관증명)하는 반면,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FTA 체결 당시 수출기업체도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자율증명)할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표 II-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증명 방식	자율 증명	기관 증명	자율 증명	기관 증명	기관 증명	자율 증명	기관증명(5년간), 자율증명	자율 증명
발 급 자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위 원회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기관 (페루:통상관광부, 한국:세관,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 서식	양국간 통일 증명 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방식	통일증명 서식-AK서 식	통일증명 서식-KIN서 식	송품장 신고방식	기관: 통일증명서식 자율: 송품장 신고방식	권고서식
유효 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4년
사용 언어	영어사용원칙					EU당사국 언어 및 한글	영어	영어, 한글 (요구 시 번역본제출)
사용 회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 포괄발급가능

자료: 관세청 FTA 포털

□ 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 변형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지역의 생산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각 FTA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름

□ 원산지 기준에는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전품목 또는 특정 품목군에 공통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고, 품목별 기준은 당해 품목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각칙임

○ 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 원칙 등)과 분야별 특례(누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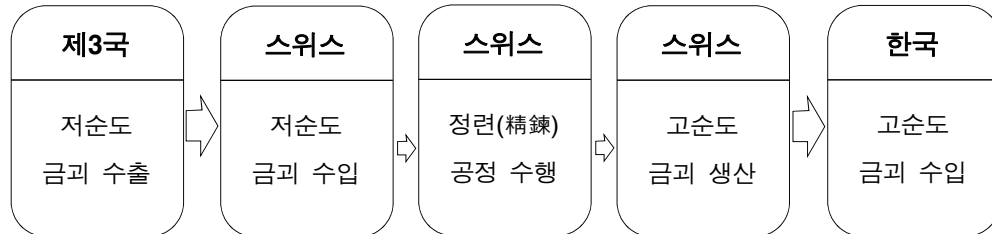
최소기준, 포장·용기 등)가 있음

- 품목별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등이 있음
- 원산지 결정 시에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 양자가 함께 연관적으로 적용됨

2) 금괴의 원산지 기준 및 세율 적용

- 수입자들은 스위스산 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인 스위스 금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해 왔음
 - 한·EFTA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증명’이 아닌 ‘자율증명’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제출한 것임
- 한·EFTA FTA에서 금괴(Gold Bar)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HS)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FTA 체결국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되는 제조·가공 행위를 해야만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금괴의 6단위 품목분류번호(HS)는 7108.12인데,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됨
- 조사 결과, 스위스의 수출업자는 저순도 금괴를 남아공 등 제3국에서 스위스로 수입하여, 고순도화 공정(정련)을 거쳐 금괴를 생산, 한국으로 수출했음이 밝혀짐

[그림 II-1] 스위스 금괴 생산·거래도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 스위스가 남아공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저순도 금괴와, 스위스에서 순도를 높인 금괴는 HS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즉, 저순도 금괴로 고순도 금괴를 생산하는 이 경우, 재료와 제품 모두 HS Code가 7108.12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 예를 들어, HS 2616.90 금광석으로 금괴(HS 7108.12)를 생산한 경우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스위스산으로 인정됨

〈표 II-3〉 FTA 발효 전후 수입 금괴(HS 7108.12)의 관세율

(단위: %)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8.04.01 이후 할당관세
	특혜요건 충족 시	특혜요건 불충족 시	
3	0	3	0

자료: 관세청

- FTA 발효 전에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괴를 제외하고는 관세 3%를 부과, FTA 발효 이후에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하였음
 - 2008년 4월 1일 이후 모든 수입 금괴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하였음

다. 처벌 및 추징 내용

- 관세청과 스위스 관세 당국의 공조를 통한 확인 결과, 본 물품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산지 위반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의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함(2008년)
- 2008년, 스위스산 금괴 9톤을 수입한 국내업체 7곳에 대해 FTA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탈루세액(부가가치세 포함) 59억원을 부과하였음
 - 또한 2009년 5월에는 10개 기업에게 수입 16건에 대해 150억원을 추징하였음³⁾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추징이 있는 후, 일부 업체들이 관세부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음
- 2년 뒤 스위스로부터 스위스산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본래 규정인 10개월 내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음
 - 이에 2011년 업체들은 관세부과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 업체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음

3) 매일경제 2009.06.30

라. 본 사건의 시사점 및 문제점

- ☐ 본 사건은 의도적인 관세포탈이라기보다는 사전 인지 부족에 따른 결과로, 스위스 수출 기업만을 신뢰하여 수입 후 뒤늦게 원산지 규정 위반임을 알게 된 사례임
- ☐ FTA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징은 수입자의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므로,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거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표 II-4〉 FTA 특혜관세 추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위반유형	2006		2007		2008(1~9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율적용오류	2	32	364	927	462	1,204	828	2,163
신청서류 요건위반	2	56	415	777	187	598	604	1,431
원산지기준 불충족	0	0	0	0	85	6,256	85	6,256
운송요건위반	0	0	39	251	4	12	44	263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 ☐ 그 외에도 FTA 관세특례법상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회신기간(10개월) 규정 및 가산세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1) 회신 기간의 도과 문제

- ☐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체약 상대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 후, 10개월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⁴⁾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도 이 10개월 회신 기간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체약상대국(스위스)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점은 수입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10개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상대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게 된 문제를 가져왔음
 - 결국 권위 있는 기관인 상대국의 법원 결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사전에 상대국의 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수입업체들은 추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임
- 회신 기간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다소 짧은 경우가 있어, 유연성 있는 운영이 요구됨
 - 체약상대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10개월 이내에 결과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신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가산세 관련 문제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실현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⁵⁾이 판례의 흐름임
- 본 사건에서는 금괴에 스위스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인증 각인이 찍혀 있는 점, 송장과 선하증권(B/L)에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 국내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음
 - 그 외에도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자는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였음
-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여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었음
- 본 사례에서는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많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⁶⁾
 -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1995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귀책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례(2012년) 등이 존재함
- 가산세 부과에 있어 가산세 감경의 기준을 법률에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6)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지배적 견해),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에 기반함

3) 기타

- ☐ 고액의 세금 추징으로 인한 자금 경색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 수입자는 원산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관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이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⁷⁾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 업무가 보장되고 추징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함
- ☐ 우리 업체들이 계약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시 주의 사항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FTA 계약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수출자의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수입자가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2. 품목분류 논쟁 - MCP(멀티칩 패키지) 사례

- ☐ 국내 전자업체들은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 MCP(Multi Chip Package)를 수입함에 있어, 수년간 이를 ‘전자집적회로’로 분류되는 HS 제8542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수입 통관하였음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추후 관세당국은 MCP를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기타의 전기기기’(HS 제8543.89-9090호)로 품목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150여개 국내 수입업체에 관세, 부가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3,000억여 원을 추징하였음
- 거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던 업체들은 2008년, 결국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2009년 10월) 납부하였던 모든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2006년,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추정 처분이 취소되어 가산세만을 환급하라는 국세심판원⁸⁾의 판결이 있었으나, 당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추징은 취소되지 않았음

가. 사건 개요

-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1998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MCP를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 8542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 통관하여 왔음
- 당시 본 물품은 신제품이었으므로 한국,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마저도 각국의 MCP 품목분류가 상이할 만큼 HS 품목분류가 난해한 품목이었음
-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국내 업체들은 본 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 관행적으로 수입신고해 왔음
- MCP는 반도체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신상품으로서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와

8)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 → 6개 심판부), 2008년 2월

에스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단일 패키지 내에 적층한 물품임

- 일반적으로 하나의 IC에는 하나의 CPU나 RAM이 들어감
- MCP의 경우 두 개나 혹은 여러 개의 반도체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로 공간이 줄어들어 하드웨어 설계자들이 좀 더 작은 기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줌

- 이 물품이 신상품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플래시메모리(HS 8542, 관세율 0%)와 에스램(HS 8542, 관세율 0%)으로 분리되어 거래되어 왔음
- 이 물품은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영구저장 공간과 동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의 기능을 하며, PDA(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사용됨
- 그런데 관세당국은 2004년 6월, 이 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 호(관세율 8%)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함
 - 통관 세관은 MCP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년 6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임
- 5년여 동안 0%로 물품을 통관해온 국내 업체들의 수입통관 건에 대해 관세 8%를 적용, 기간을 소급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
- 업체는 이에 반발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관세심판청구에서는 추정된 세금 가운데 가산세 부과 취소를, 소송에서는 결국 모든 세금 부과의 취소가 결정됨

나. MCP 품목 분류 논쟁

1) 관세청의 입장

- ☐ 수년간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을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
 - 수입신고 시 세관장은 통관절차 수행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함
 - 현행 수입신고제도(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수락 의사로 보기 힘들
- ☐ 신고납세방식으로 인해 처분청은 쟁점 물품의 내부 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 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었음
- ☐ 수입업체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함
- ☐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잘못 신고한 HS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함
- ☐ HS 위원회에서 2007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물품의 수입 당시에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당시 규정상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확인함
- ☐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각각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이 사건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

회로를 서로 적층한 것임

- ☐ HS 2007에 의하면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의 HS 2002에 의하면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함

〈표 II -5〉 제8542호에 분류되는 전자집적회로

구분	HS 2002		HS 2007
제8542호	모노리식 IC	단자 또는 도선을 갖춘 것	변동 없음
		Chip 상태의 것	
		웨이퍼 상태의 것	
		스마트 카드	〈삭제〉
	하이브리드 IC		변동 없음
	초소형 조립회로		〈삭제〉
	〈신설〉		복합구조칩 IC

자료: 관세청, 『2010년 확정 관세행정 소송사례집』, 2011

- ☐ 관세청이 주장하는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져야 함
- 이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함
 - 따라서 당해 기기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작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당국은 이 물품을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봄

2) 업체와 법원의 입장

- ☐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물품을 HS 8542호에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 물품을 HS 8542호로 인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행 속에 2004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적 경정 고지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함
- 본 물품은 기능상으로 기억소자에 해당하며, 구성요소인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의 기능이 결합된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HS 854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됨⁹⁾
-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에 따라, 통칙 1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 이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HS 8542.21-2030)와 에스램(HS 8542.21-2020)이 속한 기억소자 중 기타(HS 8542.21-2090)로 분류함이 옳다고 판단됨
- 또한 관세청이 주장하는 HS 8543호¹⁰⁾에 대한 판단에 있어, 현대 휴대폰의 저장 기능은 휴대폰의 작동에 필수이므로, 메모리 기능을 가진 이 물품을 독립적인 기능을 지닌 기기로 보기 어려움
 -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함
 - 현대에는 휴대폰의 고유한 기능에 음성정보 이외에도 영상정보, 문자정보 등의 송수신, 저장도 포함되므로, 이 물품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은 휴대폰의 작동 및

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4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0) 기타의 전기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 사건 결과

- 총 3,000여 억원의 추정금액 중 많게는 1,500억원을, 그 외에 420억원, 225억원을 추정당한 업체도 있었음
- 2006년 조세심판원은 업체가 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만과 일본이 제8542호로 분류¹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 부과 철회하였음
 - 그러나 당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철회하지 않음
- 그런데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본 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하도록 하였음
- 2008년 결국 법원은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추징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09년 2심에서도 재판부는 MCP가 독립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 현대 기술 발달과 융합으로 휴대폰은 음성정보 외에 영상, 문자정보 등 송수신도 휴대폰 작동과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함¹²⁾

11) 국제적으로 HS의 앞 자리는 동일하게 사용되나, 당시 미국은 이 제품을 HS 제8543호, EU는 제8548호에 분류하는 등 국제적으로 상이한 품목분류를 보였음

12) 2009.10.29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라. 본 사건의 시사점

- HS 품목분류가 난해한 신제품 수입에 있어 국내 업체들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세청의 거액 추징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자금에 손실을 입게 된 사례임
- 결국 모든 추징세금이 부과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복절차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입은 금전·시간적인 손해 및 ‘관세탈루’ 사건으로 입은 기업 이미지 실추는 사업 활동에 영향이 있음
- 품목분류는 기업에게 리스크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임.¹³⁾ 신상품 개발 등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업체들이 HS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을 경우 타기업 또는 외국의 통관 사례에 의존하지 말고,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¹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부여받은 품목번호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징이나 가산세로부터 기업위험을 피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최초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품목분류를 해야함
- 관세청의 해석으로 업체에 거액을 추징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단은 달랐음을 감안하여 볼 때 성급한 추징은 지양해야 할 것임

13) 김재식(2008)

14) 「관세법」 제86조

- 이와 같이 세금의 징수가 반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업체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원의 추징으로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보호 장치가 필요함

3. 기타 사례

가. 원산지증명서의 착오 기재 사례

- 국내 수입업체는 일본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칠레로부터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을 수입하고 사후에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음
- 이후 사후심사를 통해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 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해당 물품은 칠레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나, 칠레 수출자의 실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업자명이 아닌 일본의 중계무역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 문제되었음
- 과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협정관세를 적용했던 것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다시 청구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기재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

1) 사건개요

- ☐ 수입업체 A주식회사는 2004년 5월과 8월, 중계무역회사인 일본의 J사를 통해 칠레의 C사가 생산한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몰리브덴산염¹⁵⁾) 3억 7천만원 상당을 수입하였음
- ☐ A사는 해당 물품이 2004년 4월 발효한 한·칠레 FTA 대상 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2004년 12월 세관장은 이를 인정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결정하였음
 - 해당 제품은 HSK 2841.70-0000호로 WTO 양허세율 5.5%, 한·칠레 FTA 협정관세율 0% 적용 대상 물품이었음
- ☐ 세관은 2007년 8월 사후심사를 실시,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년 1월 A사에게 관세 2천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 가산세 4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 ☐ 이에 A사는 불복하여 2008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쟁점

가) 청구인 주장

- ☐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칠레로, 일본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칠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업무착오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에 일본 중계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음

15)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Ammonium Heptamolybdates)

-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의 명칭기재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¹⁶⁾ B/L 및 송품장상에 A사가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A사라는 점이 확인됨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¹⁷⁾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생산자, 수입자, 품명·규격 및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원산지증명서에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기재한 것은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관세 등 경정고지는 부당함

나) 처분청 주장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수입자가 일본의 J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3) 결정 및 처벌

- 조세심판원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착오로 협정관세 적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9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수입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Various'로 기재하도록 규정함

17) 당시 정식명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현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통합·개정됨

당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적용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상품의 송장이 작성되는 경우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과 송장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Various’로 기재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나,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없음
- A사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구매하였으나, 물품이 칠레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고,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이 아닌 수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과 환급 결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 취소 및 과세가 부당하다고 봄

4) 본 사건의 시사점

- 본 사건은 수입자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의 실수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 심판청구의 결과 원산지의 진위를 따져 처리하도록 결론이 났지만,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가 실제 수입자와 상이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18) 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 6조

- 수출자의 실수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언제나 수출자의 선량함을 인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므로, 거래 당사자는 무엇보다 원산지증명서의 무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계약서 작성 시 수출자의 실수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시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음

나. 원산지 증명의 불충분 사례

- 한·칠레 FTA를 통해 B사는 칠레에서 제조한 멀티플 소우 밴드 머신(Multiple Saw Band Machine)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협정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하였음
- 추후 통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족함을 느낀 세관장은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간 내 회신이 없었음

1) 사건개요

- B사는 2회(2006년 6월 15일, 2006년 10월 16일)에 걸쳐 칠레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칠레 FTA 협정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 통관 세관장은 B사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2008년 2월 19일), B사는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였음(2008년 3월 3일)

- 세관장은 B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고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 검증¹⁹⁾을 위한 서면질의서를 송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회신기간이 경과하도록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
 - 서면질의서 등 서류는 2008년 9월 29일과 2008년 9월 30일에 각각 송달되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는 회신기간(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
- 세관장은 2009년 3월 1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의 관련 규정²⁰⁾에 따라 FTA 협정관세 규정을 배제, B사에 관세 15,649,670원, 부가가치세 1,564,960원, 가산세 3,442,910원(합계 20,657,540원)을 부과함
- 이에 불복한 B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2009년 6월 15일)

2) 쟁점

- B사는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은 수출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생산자의 한·칠레 FTA 관련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것이며, 쟁점 물품의 주요 부품이 칠레산이므로 물품이 칠레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19) FTA별로 원산지 검증방법이 상이함. 칠레·싱가포르·미국은 수입국세관이 수출국 생산자 또는 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검증'방식, EFTA와 EU는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ASEAN은 선 직접검증, 후 간접검증 방식으로써 두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20) 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 제3호(당시 제5.8조 제4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 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칠레산에 해당되므로 한·칠레 FTA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함
- 반면, 과세관청은 원산지 검증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자료와 관련 자료가 필수적임에도 회신기간 내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관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함

3) 결정 및 처벌

- 수출자 및 생산자는 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²¹⁾도 하지 아니하였음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²²⁾에서도 역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협정관세 적용 여부 및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신 기간을 30일로 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제 규정을 고려할 때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5.8조 제3호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과 더불어, 단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 서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제2항, 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2010년 법령 폐지됨)

4) 본 사건의 시사점

- ☐ 본 사건은 물품의 원산지를 수출자 및 생산자가 회신 기간 내 소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사례임
- ☐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체약국(칠레)이라 할지라도 관세당국의 검증서류 요청 시 적절히 응하지 못한다면, 수입자도 특혜 관세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
- ☐ FTA 관련 서류 증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2001년 미국 관세당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 부품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한 포드(Ford) 자동차에 4,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2006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파이오니어(Pioneer)에 3,70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적이 있음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수입관련 서류들을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단지 수출자 및 생산자의 비협조로 인해 추징을 당하게 된 사례이므로 수입자의 고의, 과실과는 무관함
- ☐ 수출자의 비협조로 인해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자의 입장은 곤란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의 의무이행까지 강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산세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음

Ⅲ. 주요국의 담보제도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관세보험은 국가의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와 주요국인 미국, EU의 관세담보제도를 조사함
 - 담보는 관세채권의 확보수단 중의 하나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체납관세에 대한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임
- 따라서 보험 유형 가운데 납세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법규준수도 제고의 기능을 가지는 보증보험의 구조와 운영방법을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 가운데 납세보증보험을 비교대상으로 함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가.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1) 개요

-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는 국가가 담보물 위에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후에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로서 관세채무를 변제하는 공법상의 제도로, 담보는 세관의 관세채권 확보 수단임

-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세채권의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공함
 -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 검사 등 세관의 신고서 처리, 신고납부, 물품 반출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관세법」 제3절 납세담보(제24조 내지 제26조의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함)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음

2) 담보 제공 대상자

- 법정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가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함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결과 통지의 유효기간으로 함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확인결과를 통지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함
- 최초 수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 담보제공대상자와 담보제공 생략대상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²³⁾

-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선고받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 등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관세법」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등 다음의 경우 최근 2년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으면서 담보특례자 지정요건²⁴⁾을 충족하는 업체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 담보고시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경우

3) 담보 제공 사유

-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 담보제공대상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²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단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함
 -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23) 관세법 제24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4) 담보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25) 담보고시 제14조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추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우 개별담보를 제공함²⁶⁾

4)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등²⁷⁾으로 하며 담보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²⁸⁾가 포함됨
- －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일시 수입통관증서, 국제도로운송증서,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등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5) 담보의 제공 방법

-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담보물이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담보물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물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 경우 납세보증보험증

26) 조건부 감면세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물품은 현재 무담보 통관을 허용함

27) 관세법 제24조, 담보고시 제13조

28) 담보고시 제13조 제3항

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등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으로 함
- 일반적으로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통관보류, 통관허용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입 신고를 한 자가 통관 보류 등이 된 물품의 통관 허용, 유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함
- 관세법에 따른 담보는 담보를 제공하는 기간에 따라 개별담보와 포괄담보로 구분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신용담보가 있음
 - 개별담보는 담보제공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제공함
 - 포괄담보란 계속, 반복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일정기간 일정액의 담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침
 - 신용담보란 「환급특례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신용담보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를 말함

6) 담보의 관세 충당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로써 관세 등을 징수함²⁹⁾
 -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 금전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관세 등에 충당함
 -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환가한 금전을 관세 등에 충당함

7) 담보의 변경 및 해제

-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함
 -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법정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 － 담보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담보 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음

29) 관세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나. 미국의 관세담보제도

1) 개요

- ☐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국경보호관리국, 이하 ‘CBP’)는 국가의 관세수입 확보와 관세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관세담보(CBP bond)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화주에게 물품을 즉시 운송하기 위해 관세 납부 절차를 물품 반출 이후에 진행하도록 담보를 통해 관세채권을 확보함
- ☐ 미국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entry),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 반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함

〈표 Ⅲ-1〉 미국의 통관 절차

유형	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담보(customs bond) 제공 및 물품반출	추산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기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비교분석」 재구성

- ☐ 미국 관세법(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19 USC) 1623 및 연방규정(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Customs Duties; 19 CFR) part 113에 관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CBP Bond는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요

구되는 행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CBP에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같은 성격을 가짐³⁰⁾

- Bond의 당사자는 수입자 등의 본인(principal), 주로 보험회사인 보증인(surety)과 수혜자(beneficiary)로 구성됨
 - 본인과 보증인은 본드의 채무자(obligor)이며 CBP는 승인하는 모든 본드에 대한 수혜자로서 3자간 연대 보증계약의 성격을 가짐³¹⁾

2) 담보 제공 대상자

-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수입자 등의 본인은 Bond를 제공하여야 함
 - 수하인, 수하인의 대리인 및 명의상의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³²⁾
 - 본인은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인, 보세창고운영인, 자유무역지역운영인 또는 CBP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다수의 관계자가 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류 또는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CF(Customs Form) 301 서식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³³⁾
 -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때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신고를 별도로 제출함
 -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납세신고는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제3자 명의로 CF 301을 제출하여야 함

30)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BP bonds, 2006

31) 송선옥, 「미국 관세담보제도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1권 3호)

32) 납세신고의 수하인이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받으려면 실지화주 신고를 하여야 함

33) 19 CFR 142.4

-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Bond를 발행하도록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로, 본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데 동의함
 -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본인과 보증인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도, 본인과 보증인의 위임자, 본인과 보증인의 위임자, 본인의 대리인과 보증인이 될 수 있음³⁴⁾
- 관세사는 보통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Bond를 제공함
 - 예외적으로 납세신고가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하는 때에 제공된 담보의 이행력이 지속됨³⁵⁾
 - 수입자는 관세사를 통하여 또는 직접 보증인으로부터 Bond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의 비용이 훨씬 적음
- 법인 보증인은 재무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를 일정 담보액 한도 내에서 담보 보증인으로 승인하여 공고하는 업체로 함³⁶⁾
 - 재무안정성검토를 통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보증인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매년 7월 1일 관보를 통해 공고됨(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³⁷⁾
 - 회사명, 위치, 연락처 및 담보한도를 공고하며 2012년에 공지된 업체 수는 270개임
- 보증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FMS³⁸⁾(Financial Management Service, 이하

34) 19 CFR 113.31

35) 실제로는 관습적으로 관세사가 자기의 명의로 담보로 즉시반출 신청을 하고 납세신고 수하인의 명의로 담보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하인은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인이 되는 것임. 같은 연유로 관세사가 자신의 명의로 담보로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납세신고는 수하인의 명의로 담보로 신고할 수 있음, 김중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2004. 8., p.26

36) 19 CFR 113.37, 보증인은 19 CFR 113.35에 규정된 개인보증인(Individual sureties)과 법인보증인(Corporate sureties)으로 구분됨

37) http://www.fms.treas.gov/c570/c570_a-z.html

38) 연방정부기관에 지급서비스, 채권회수, 예치시스템, 일간 현금흐름 예측, 체납관리 및 교육, 컨설팅 등의 금융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담당함

‘FMS’)에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면 재무부는 일정 요건³⁹⁾에 따라 공인 여부를 판정함⁴⁰⁾

- 보증업체는 연방법 등 관련법령이 신원을 보증하고 사법적 절차가 보증하는 업체로서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25만달러를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함⁴¹⁾
- 제반 요건을 갖춰 공인증명을 받은 보증업체는 재무부에 분기별로 재정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는 한 매년 7월 1일 자격이 갱신됨
- 공인된 보증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 또는 미국 내의 다른 주에 10만달러 이상의 적법투자금을 납입하고 보증사업을 영위할 것을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아야 함
- 담보한도는 납입자본의 10%와 잉여금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3) 담보 제공 사유

- ☐ CBP Bond는 본인이 이행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함
 - 물품의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보관 또는 운송만 하는 운송인, 창고운영인 등의 관리인과 다름
 - 수출신고 절차에 의해 환급 또는 환급 전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한 선박의 선주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다름
- ☐ 특정 관세 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의무 이행 범위에 따라 10가지 담보조건(customs

39) 6 USC 6 내지 13

40) 31 CFR 223.1~223.10

41) 31 USC 9304, 9305

bond conditions)을 규정하고 있음⁴²⁾

- 수입자가 제공하는 CBP bond에 의해 요구되는 수입자의 의무는 관세 등 및 수수료의 납부,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신고서류 제출 등, 제반 수입요건 준수, 물품 검사, 제반 비용 상환, 감면 요건 준수 등이 있음
- 담보물품의 관리인(보세운송, 보세창고 운영, 보세판매장 운영, 컨테이너 시설관리인 등)에게 부과되는 CBP Bond에 의한 의무는 물품 수령, 운송, 안전보관 및 보세물품의 배치 등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작성하는 것임

〈표 Ⅲ-2〉 미국의 담보 제공 사유

activity code	activity name	비고
1	수입자/관세사 (Importer or broker)	
1a	환급(Drawback Payments Refunds)	
2	보세물품 관리(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포괄담보만 적용
3	운송인(International Carrier)	
3a	운송기기(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포괄담보만 적용
4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포괄담보만 적용
5	품질검사(Public Gauger)	
6	털, 모피제품(Wool & Fur Products)	개별담보만 적용
7	선하증권(Bill of Lading)	개별담보만 적용
8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치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	개별담보만 적용
9	중립성(Neutrality)	개별담보만 적용
10	제소비용(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	개별담보만 적용

자료: CF 301 Section II

☐ 이외에 Airport Security Bond 등 추후 통지에 따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7가

42) 19 CFR 113.62~113.73

지 유형이 있음⁴³⁾

4) 담보의 종류

- 원칙적으로 담보는 수입하는 때에 법인 보증인의 보증(approved corporate surety), 금전(cash deposit) 또는 국공채로 제공될 수 있음⁴⁴⁾
 - 보증인의 담보 대신에 항구세관장(port director)은 담보에 상당하는 현금, 채권(저축성 채권 제외), 채무증서, 국고증권 또는 재무증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⁴⁵⁾
- 재무부 소속 FMS는 31 USC 제9304조 내지 제9308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보증담보(surety bond program)를 관리함
- 보증서 이외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는 미국 국공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CBP는 담보가 제공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현금 또는 국공채를 보유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음⁴⁶⁾
 -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담보(pledge)의 담보기간은 당해 수입신고가 최종 정산된 후 2년이 되어야 종료됨
 - － 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담보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현금담보는 청산 후에 반환됨
 - － 19 U.S.C. 1202에 의해 HS 제98류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수출되거나

43) 19 CFR 113 Appendix A~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Exclusion Bond, In-Bond Export Consolidation Bo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mporter Security Filing(ISF), Marine Terminal Operator 등

44) 19 CFR 142.4(a)

45) 19 CFR 113.40

46) CBP(2006)

적절히 폐기된 경우 현금담보는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에게 반환됨

5) 담보의 제공 방법

- 담보의 보증 기간에 따라 개별담보(Single Transaction Bond)와 포괄담보(Continuous Transaction Bond)가 있음⁴⁷⁾
 - 개별담보는 수입자가 단일 선적물품에 대해 제공하는 단일 수입 담보로서, 발행대상인 단일한 수입신고 또는 거래를 보장함
 - 포괄담보는 물량이 많거나 1년 동안 여러 항을 통해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년의 효력이 있으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본인 또는 보증인에 의해 종료되기 전까지 유효함
 - CBP 영역을 빈번히 입출항하는 운송인 또는 정기적으로 CBP와 거래하는 물품보관업자들 또한 사용함
- CBP 담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신규 포괄담보 업무는 Revenue Division(이하 'RD'라 함) Bond Team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함⁴⁸⁾
 - 2010년 2월부터 Airport Security, Importer Security Filing(ISF)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을 포함한 모든 신규 포괄담보는 RD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개별담보는 이전과 동일하게 당해 항구 세관에 신청해야 함
- 모든 포괄담보는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되어야 하며 RD는 신청자가 요청하는 담보 발행일자로부터 60일 이전에 담보신청을 승인함⁴⁹⁾

47) CBP(2006)

48) Indiana주 Indianapolis에 소재한 RD는 2011년부터 담보업무의 전산화에 착수하여 제출, 해제신청 및 거부 등의 절차와 보관방식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49) CBP, Policies and Procedures Updated, 2011

- 제출서류로는 CF 301, 19 CFR 113.12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 신규 또는 정보변경이 필요한 수입자의 경우 CF 5106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음
- 개별담보의 경우 항구세관장이 결정하며, 포괄담보 금액은 RD Bond Team이 담보가액을 설정하고 검토함
 - 개별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격에 제반 세액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되며, 다른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 담보가액은 전체 수입가격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됨
 -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제공하는 포괄담보의 경우 최소담보금액이 50,000달러 또는 이전 12개월 동안의 납부한 총세금과 요금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함⁵⁰⁾
- 물품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 담보의 제공이 면제됨⁵¹⁾
 - 납세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추산세액을 예치한 경우, 수입업자가 세관과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 － 쿼터 제품, 항구세관장의 판단으로 쉽게 품목분류나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세관장 및 환급업무 부서는 담보금액의 적정 여부 및 법규 준수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Bond의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함

50) 10만달러까지는 1만달러단위로 올림하고 이후는 10만달러단위로 올림

51) 19 CFR 142.4

6) 담보의 관세 총당⁵²⁾

- ☐ 본인이 CBP Bond의 조건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CBP는 본인과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인이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CBP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본인이 Bond의 다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CBP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손해배상금액은 Bond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 ☐ CBP Bond는 연대보증계약으로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CBP는 본인과 보증인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과 보증인은 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연대 및 단독 채무를 가지기 때문에 CBP는 어떠한 당사자로부터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증인이 CBP에 지급한 경우 보증인은 본인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CBP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⁵³⁾

6) 담보의 변경 또는 종료

- ☐ 본인 또는 보증인은 Bond를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National Finance Center의 RD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항구세관장

52) CBP(2006)

53) CBP(2006)

에게 신청하여야 함

- Bond의 변경(change)은 담보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 삭제, 변경하는 것이며 추가(rider)는 Bond 본인의 이름, 주소, 기타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⁵⁴⁾
- Bond의 종료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로운 거래에 대해 당해 Bond에 대한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⁵⁵⁾

다. EU의 담보제도

1) 개요

- ☐ 관세당국은 관세채무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공하는 담보를 관세담보(security to cover customs debt)라 함
 - 관세채무(customs debt)란 특정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지불하도록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채무를 말함
- ☐ 유럽공동체 관세법(Europe Community Customs Code; 이하 ‘CCC’)의 Title VII ‘Customs Debt’에 관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CCC 제189조 내지 제242조 및 IPC(Implementation Provisions for CCC) 제857조 내지 제912조에서 관세채무의 성립, 채무 확정 시기, 관세의 충당, 납부 기한, 소멸 등을 규정함
- ☐ EU 역외국으로 물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제시

54) 19 CFR 113.24

55) 19 CFR 113.27

(present) - 요약신고(summary declaration) - 수입신고 및 담보 제공 - 물품 반출로 이루어짐

2) 담보제공 대상자

- ☐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세채무자는 통관신고인 및 대리를 위탁한 본래의 통관신고의무자임⁵⁶⁾
 - － 본인 이외에 제3자의 담보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
- ☐ 보증인(guarantor)은 관세채무의 담보금액을 채무인과 연대 또는 단독으로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여야 함⁵⁷⁾
 - 보증인은 EC에 설립된 제3자로서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3) 담보제공 사유

- ☐ 담보는 관세법령에서 담보를 ‘임의로(optional)’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 및 관세채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세관의 재량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⁵⁸⁾
 - 법정 기한 내에 또는 관세당국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었던 관세채무가 법정 기한 내에 납부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 물품의 수입신고 또는 감면적용 등의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배된 경우 등 관세채무가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⁵⁹⁾

56) CCC 제201조 제3항

57) CCC 제195조

58) CCC 제190조 제1항

59) CCC 제201조 내지 제205조

- 자유유통(free circulation) 또는 일시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인, 대리신고의 경우 본래의 수입신고인, 신고 정보를 제공한자 및 신고 오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했던 자가 채무자가 됨
 -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의 이동, 물품의 반출, 일시보관 및 감면 적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 당해 물품을 반입한 자 및 수령자 등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 및 위법한 사실을 인지한 관련 당사자가 채무자임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세부과대상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소비 또는 사용한 자,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관련 당사자가 채무자임
- ☐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 수출 감면 절차가 위법한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함⁶⁰⁾

4) 담보의 종류

- ☐ 담보는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기타 지급수단 또는 보증인의 보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⁶¹⁾
- 현금에 상당하는 수단은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수표, 모기지(mortgage), 저당금 또는 연대채무 등으로 함
-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채무의 이행을 법정 담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 법정 담보물 이외에 다른 종류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음

60) CCC 제209조 ~ 제211조

61) CCC 제193조

5) 담보의 제공 방법

- ☐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세채무에 대해 하나의 개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관세당국이 승인한 경우 관세채무가 발생한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종합담보 (comprehensive security)를 제공할 수 있음⁶²⁾
- ☐ 담보액은 필요적(compulsory) 또는 임의적 담보제공사유와 관세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액담보(a flat-rate security)로 구분할 수 있음
 - 필요적 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채무금액 또는 담보가 요구되는 때에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예정담보금액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관세당국이 추산한 최대 금액 또는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담보금액으로 함
 - 임의적 담보로 관세당국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당국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정액담보의 경우 예상되는 채무를 항상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 ☐ 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세채무의 이행기한은 관세당국이 정하는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 단, 자연재해, 불가항력 및 관세당국의 승인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 또는 파괴된 경우 등 및 관세당국의 허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의 감면에 대한 담보 제공은 배제함
 - 위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스크랩 및 폐기물은 EC의 물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 공공기관인 채무자와 ECU 500⁶³⁾ 이하의 물품에 대한 담보는 면제됨

62) CCC 제189조

63) 1ECU(유럽 통화 단위)는 1유로와 같음

6) 담보의 관세 충당

- ☐ 관세채무는 세액이 확정된 즉시 또는 늦어도 물품이 반출된 다음날 납부되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세당국이 정하는 31일 이내의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함
 - 세액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EC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은 채무 확정 2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에 관한 채무는 확정 관세가 EC 법령 관보에 공시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수입신고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한 관세채무는 관세당국이 예정 납부세액을 산정하거나 채무를 확정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 관세채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납부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당국이 예정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채무를 확정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해 관세액이 충당되어야 함
 - 세액이 납부된 즉시 관세채무가 종료됨
- ☐ 채무이행은 채무발생일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함

7) 담보의 변경 및 종료

- ☐ 관세당국은 제공된 담보가 법정기한 내에 관세채무의 지급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관세채무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담보는 즉시 해제됨
 - 관세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거나 담보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적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의 일부를 해제함

라. 영국의 담보제도

1) 개요

- EC 관세법에 의해 물품이 통관될 때 발생하는 관세채무는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담보되어야 함
 - 관세 채무란 공동체 역내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관세, 반덤핑 관세, 공동농업정책세⁶⁴⁾)를 말함
- 관세채무는 관세의 담보(security)로써 수입되는 때 납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납부를 ‘예치금(on deposit)’의 성격인 담보라고 하며 ‘납부(payment)’라 하지 않음⁶⁵⁾
 - 예치한 담보가 관세채무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부족액을 충당함
- 담보에 관한 사항은 EC 관세법 및 영국 관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119(Delivery of imported goods on giving of security for duty), s157(Bonds and security), 영국 국세 · 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고시(Notice)에서 규정함

64) Common Agricultural Policy Charge, CAP charge: EC 역내의 농산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공통의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

65) HMRC Notice 199 (July 2012)

2) 담보제공 대상자

- ☐ EC 관세법에 의해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관세채무를 지는 자는 수입신고인으로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인 또는 회사를 말함⁶⁶⁾
 - 수입신고인은 본인 명의 또는 대표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자로서 물품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HMRC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자를 말함
- ☐ 화주가 대리인에게 수입신고를 대행시킨 경우 대리인 또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리유형에 따라 관세채무가 달라짐
 - 본인(수입신고인 등)을 대신하여 직접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본인이 수입신고인으로서 관세채무를 부담함
 - 본인을 대신하여 간접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대리인과 본인이 공동으로 관세채무를 부담함(연대채무)
- ☐ 일반 보증서 거래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Trader Unique Reference Number)를 발급받은 개인 수입자와 간접세납부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자 또는 대리인임
 - 일반 보증서의 보증인은 은행 또는 보험사로서 HMRC Liability Team으로부터 승인 받는 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회사는 이러한 승인을 거침

66) HMRC Notice 199 (July 2012)

3) 담보제공 사유

-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해 부과할 관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현금예치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⁶⁷⁾
- ☐ 담보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관세당국은 어떠한 자에게도 Bond 또는 다른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⁶⁸⁾
 - 이러한 담보는 관세 또는 소비세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하여 제공됨
 - 관세당국은 담보로 채권을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담보제공 요구를 취소할 수 있음
- ☐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수출하는 농산물에 부과되는 공동농업정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이외에 관세납부연기제도(Duty Deferment Scheme) 등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자, 수입자의 대리인 및 창고, 자유지역물품을 보관하는 자가 관세납부연기제도를 통해 관세의 납부를 연기하는 경우⁶⁹⁾
 - － 수입물품을 수입 또는 관세영역,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의 납부를 평균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음⁷⁰⁾

67) 영국 관세법 s119

68) 영국 관세법 s157

69) HMRC Notice 101

70) 물품을 통관하고자 할 때마다 관세를 건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신고서류에 Deferment Approval Number(DAN)를 기입함으로써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음, 세관의 건별 납세 처리가 생략되어 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음

-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등이 감면된 물품⁷¹⁾
- 역내가공경감조치(Inward Processing Relief) 및 역외가공경감조치(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에 의해 관세 등이 감면된 물품⁷²⁾

- ☐ 수입하는 때에 확정될 수 없는 세액의 납부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보증서 거래(General Guarantee Account)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정되지 않은 관세 또는 일시수입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 없는 담보(cashless security)로서 현금유동성을 제공함
 - 본인과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인 은행 수수료만 발생함

4) 담보의 종류

- ☐ 담보는 Bond, 보증서(guarantee) 또는 기타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음
- ☐ 수입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보세창고로부터 물품을 반출해야 하는 경우 및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 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음⁷³⁾
- ☐ 관세납부연기제도의 경우 은행, 보험회사 또는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에서 제공한 보증서 형식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⁷⁴⁾
 - 보증은 가장 효율적, 실용적 및 유동적인 방법으로 연기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장함
 - 은행 등은 보증인으로서 행위하기 위해 HMRC의 승인을 받아야 함

71) HMRC Notice 200

72) HMRC Notice 221, 235

73) HMRC Notice 102

74) HMRC Notice 101

5) 담보의 제공 방법

- 일반 보증서의 신청 요건을 갖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세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심사를 거쳐 서면으로 보증서를 승인하고 보증계정 고유번호를 발급함
 - 대리인이 보증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상용 위임장(Form G1), 본인의 대리인이 보증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정 위임장(Form G2), 보증서 계정 신청서(Form G3) 및 은행에 의해 작성된 보증서 서식을 제출함
- 담보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수입 건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금액으로 하되, 영국 국세·관세청 통관시스템(CHIEF)에 의해 한도초과가 자동으로 관리됨
 - 수입통관이 진행되는 동안 CHIEF에 의해 자동으로 채권과 채무가 정산됨
 -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Form C18을 제출하여야 함
- 관세납부연기제도의 경우 보증인은 월별 최대 한도까지 개별 채무 및 총액을 담보할 것을 약속함
 - 담보액은 한 달 동안 납부 연기가 가능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인이 보증서에 제시한 월별 금액의 두 배를 한도로 함
 - 보증인은 Form C1201에 의해 관련 금융 당국에 납세보증만을 담보할 것을 약속하여야 함

6) 담보의 관세 충당

- 일반 보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각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급코드를 입력하여 지급을 실행함

-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확정된 세액이 당초 담보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보증 금액은 보장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후납부통지(Post Clearance Demand Note C18)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함

7) 담보의 변경 및 종료

- ☐ 일반적인 담보의 변경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은 EC 관세법에 따름

마.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 ☐ 우리나라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관세채무를 가지나, 담보제공 생략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은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EU는 수입 또는 수출신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한 화주,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수입신고인의 연대채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함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인이 해당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채무를 가짐

- 그러나 EU는 간접대리의 경우 수입신고인의 대리인이 연대하여 관세채무를 지며, 미국의 경우 관세담보제공자로 수입자와 관세사를 포함하고 있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조건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연대채무를, EU의 경우 단독 또는 연대 채무를 가짐
- 담보제공사유로는 금전적 관세채무 및 통관절차의무 불이행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담보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보증서 등을 포함한 담보금액의 평가가 필요한 자산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현금 및 그에 상당하는 기타 지급수단과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에서는 현금 및 기타 지급수단보다 비용절감 및 신용공여 등의 장점이 있어 주로 보증서가 이용됨
- 담보금액은 우리나라와 EU의 경우 관세채무액으로 하고 미국의 경우 채무부 또는 항구세관장에서 채무액을 산정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담보는 개별담보 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포괄담보로 나뉘며, EU의 경우 담보하여야 하는 채무가 둘 이상인 경우 종합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담보의 관세충당, 변경 및 종료절차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 Ⅲ-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항목	한국	미국	EU
담보 제공 대상자	무담보 원칙 (납세의무자, 보증인)	담보조건에 해당하는 자 (본인, 보증인)	관세채무자 또는 채무를 지게 될 자 (신고인, 보증인)
담보 제공 사유	-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입신고 및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 - 환급특례법의 일괄납부 -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 감면세 대상 -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 기타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개별) - 덤핑방지 · 상계관세 부과 전의 잠정조치(개별) -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우(개별)	• 의무이행 범위에 따른 10가지 조건 - 수입자 또는 관세사 - 환급 - 보세물품 관리 - 운송인 - 운송기기 - 자유무역지역 - 품질검사 - 털, 모피제품(개별) - 선하증권(개별)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치(개별) - 중립성(개별) - 제소비용(개별)	• 수입 - 자유유통 - 일시수입물품 - 물품 반입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의 이동 또는 물품의 반출, 일시보관 및 감면 적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 구역에서 관세부과대상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 수출 - 관세부과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 - 수출감면절차가 위법한 경우
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등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법인 보증인의 보증(approved corporate surety), 금전(cash deposit) 또는 국공채 (기타 지급수단으로 담보 제공 가능)	현금, 현금에 상응하는 수단 및 보증서 (기타 지급수단으로 담보 제공 가능)
담보의 제공방법	관세 상당액 (개별/포괄/신용)	재무부 또는 항구세관장이 결정 (개별/포괄)	관세 채무금액: 필요, 임의, 정액담보 (개별/종합)

IV. 수입자 보호 관련 제도 검토

- 현재 궁극적으로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관세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이 존재하며, 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봄
 - 본 제도는 관세사 과실로 수입자가 금전적 피해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 등을 보상, 이로써 수입자에게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미국 및 EU의 관세법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비교, 우리나라 관세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봄
 - 최근 FTA 확대에 인한 추징 증가와 관련, FTA 관세특례법의 규정은 따로 살펴보도록 함

1. 관세사 책임 보험

-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임
 -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신고의 대리, 관세 관련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의 대리 등임
- 관세사가 수출입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 통관 서비스 업무 수행 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해 화주에게 물질·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관세사법」에는 관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⁷⁵⁾
 - 관세사는 1인당 1천만원 상당 이상의 보험가입, 공제가입, 기타 보증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가. 제도 개관

-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관세사)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인 의뢰인(수입자)이 금전적 피해를 받는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과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임
 -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⁷⁶⁾
- 보험사는 관세사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비용⁷⁷⁾을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며, 각 청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됨
- 즉, 업무행위자인 관세사가 수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줌으로써 종국적으로 수입자를 구제하는 성격을 가짐

75) 관세사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76) 상법 제719조

77) 손해배상금은 주로 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이며 사고처리비용은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구성됨

- 사고처리를 보험사가 대행함으로써 관세사는 배상책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
 -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직간접적으로 보험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책임보험은 그 기능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됨⁷⁸⁾
- 관세사가 업무처리 중 고의·과실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화주가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세사가 화주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음
- 2006년 이후 FTA 협정관세 적용 착오 등의 관세차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사의 손해배상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관세사회⁷⁹⁾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특히 2007년 개정 「관세사법」⁸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장조치를 강화함⁸¹⁾
-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 무사고 갱신 시 할인율을, 보험금 수령 후 혹은 사고 조사 진행 중 갱신인 경우 할증률이 적용됨
- 보험료 = 1인당 보험료 * 가입 관세사 인원수 * 인원수 할인 적용률 * 무사고 할인 또는 할증 적용률(%)
 - 1년 1회 일시납으로, 매 1년마다 갱신 및 재가입을 통하여 보험을 적용함

78) 김만홍(2005), p. 263

79) 관세사의 권익 보호 및 관세업무의 개선을 위해 197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80) 관세사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24조의3

81) 2009년부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포함) 및 합동사무소는 등록 관세사 전부가 동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관세사의 일부 가입은 불가능함

- 보증보험과 달리 관세사 보험은 관세사에게 구상권⁸²⁾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뿐 아니라 계약자(관세사)의 경제적 손실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증보험과 차이가 있음⁸³⁾

〈표 Ⅳ-4〉 이행보증보험, 공제와 배상책임보험 비교

구분	이행보증보험, 공제	배상책임보험
보상 금액	제3자가 입게되는 재산상의 손해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 (사고처리비용: 변호사 비용 등)
담보 범위	고의, 과실	과실
구상권	있음 보증보험, 공제는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전문인 자신의 손해는 담보받지 못함	없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가능
보험가입 절차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또는 재무상태가 불량하면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절차가 복잡. 증권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며 실정법 위반사태 발생(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해당)	○ 전문직업에 대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의사를 표시(신청서 제출)하고 가입 가능 ○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사고율, 전체가입자수, 보상한도액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개인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가입 가능
담보의 기준	손해사고기준증권으로 다른 많은 보험상품과 유사하며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최초가입일 이후에 행하여진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 제기된 배상 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

자료: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8

82)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83) 김만홍, 「보증보험과 책임보험의 비교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11호, 2005, p. 264

- 손해 보전 조치 가운데 공제 및 보증보험은 금전의 일시적 대여기능을 하고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관세사의 손실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⁸⁴⁾

〈표 IV-5〉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지급건수	지급보험금	손해율
2002년	8	67	189
2003년	12	141	173
2004년	11	116	76
2005년	15	116	79
2006년	26	203	120
2007년 ¹⁾	34	244	135
2008년 ²⁾	28	141	55
합계	134	1,028	100

주: 1) 2007년 손해사정중인 가소1건 추산보험금 600만원

2) 2008년 6건 3,200만원 포함됨

자료: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9

- 주요 배상사례는 가산세, 관세발생 관련사고로 전체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산금, 환급누락 관련사고가 뒤를 이음⁸⁵⁾
- 가산금 및 환급누락 관련 사고의 건당 사고금액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발생, 환급기한 도과, 감면대상 물품 등에 대한 착오신고, 관세 부과항목의 신고 누락, 납부고지서 등의 고지 누락 등의 입력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의 손해사례가 있음

84)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과 과제」,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7

85) 이주열(2009), p. 99

나. 현행 규정과 문제점

- 관세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명백히 수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관상의 오류, 추징 등의 위험은 관세사 보험으로 수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음
- 화주가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경우 관세는 화주가 부담하지만, 가산세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과실을 문제삼아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관세사가 화주에게 손해 배상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관세사 자기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⁸⁶⁾
 - 관세사 자기부담금 외에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화주가 기간 이익을 보았음을 이유로 제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
 - 그리고 관세사가 차기 계약 시 관세사 보험에 할증률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 채무이행 수단이 확립되지 않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앞 장에서 살펴본 검토 대상 주요국은 보증보험 성격의 보증서를 수입자와 관세사 등의 채무이행 수단으로 운영하되, 전문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관세사가 개별 보험회사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6) 세정신문, '관세사 손해보험제도 개선돼야', 2012.01.30

다. 보완방안

- 관세사의 잘못이 아닌, 수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관상의 오류와 그로 인한 추정 등의 위험은 관세사 보험으로는 수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관세사의 보험금 청구 시 가산세 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일단 가산세 부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관세사에게 선지급하고, 사후에 화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한편, 보험사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사법상 규정된 보증보험을 활용하거나, 관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⁸⁷⁾
 - 현재 관세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관세사들은 보험상품을 비교 또는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2. 관세법 규정 검토

- 관세법에서는 관세 행정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가산세 또는 벌금 등의 제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유사하나 처벌의 감경,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등의 규정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수입자 보호와 관련된 미국과 EU의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그 외 수입자의 보호 관점에서의 관세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87) 세정신문, 2012.01

도 생각해 봄

가. 외국의 수입자 보호 규정

1) 자진신고 시 벌칙(penalties) 감경(미국)

- ☐ 미국 관세법상 벌칙(penalties)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행위자의 의도와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
- ☐ 미국 관세법에서 벌칙 관련 조항은 집행 규정(Enforcement Provisions)⁸⁸⁾ 내에 제 1592조 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and negligence) 조항에 규정되어 있음
 - 제1592조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업자의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실(negligence) 여부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벌금을 부과함
- ☐ 사기는 최고 벌칙 중 하나로 부정행위적 위반은 그 물품의 국내가치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됨
- ☐ 중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40% 이하의 금액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 ☐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88) 19 USC Part V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20%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 과실 행위의 일부, 사무오류(clerical error)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 기재(mistake of facts) 등은 벌칙 부과의 예외 사유가 됨

- 최초 사무착오로 인한 전자적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반복행위는 과실행위로 보지 않음

□ 또한, 동 조항에서는 공식적인 수사 시작 전,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사전 고지(prior disclosure)’한다면 벌금이 경감됨을 규정함

- 중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위법 사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전 고지한 후 지불해야 할 관세를 납부한다면 이자 이하의 벌금만이 부과됨

□ 제1509조 (g)항에 따르면,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유지, 보관하지 못한 경우, 고의적 또는 과실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입 건당 10만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각각 75%, 4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됨

- 통관의 정확성, 관세, 벌금, 과태료 부과, 관세법 준수 등의 조사를 위해 관세 당국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함

□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에 의해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제출 요구를 이행했음이 다른 증거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음

〈표 IV-6〉 미국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 수준

구분	처벌 내용
사기(fraud)	그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벌금
중과실 (gross negligence)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40% 이하의 벌금
과실 (negligence)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20% 이하의 벌금
사전 고지 (prior disclosure)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공식적인 조사 시작 전 이러한 위법사실을 사전 고지한 경우 (A) 사기 -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10% 이하의 벌금 (B) 중과실 또는 과실 -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 이하의 벌금

자료: 미국 관세법(19 USC) 제1592조(c)

〈표 IV-7〉 미국 관세법 제1509조에 따른 처벌

규정	위반 사항	처벌 수준
제1509조 (g)항	(2)(A)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유지(maintain), 보관(store), 복구(retrieve)를 고의적(willful)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건당 10만 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품의 평가가격(appraised value)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
	(2)(B)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과실(negligence)로 유지, 보관, 복구하지 못한 경우	수입 건당 10만 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품의 평가가격(appraised value)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
	(3)(A)~(C) 불가항력(act of God)이나 자연재해로 제출 요구받은 정보를 분실한 경우 - 제출 요구를 이행했음이 다른 증거에 의해 증명된 경우 - 요구서류가 수입 신고 당시에 세관에 제출되어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벌금 면제 (avoidance of penalty)

자료: 미국 관세법(19 USC) 제1509조 (g)

- 미국은 내국세법에서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규정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음⁸⁹⁾

2)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EU)

- CCC Title VII ‘Customs Debt’ 조항에 관세담보(security to cover customs debt)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면책 사유를 명시함
- 관세당국은 법정 관세액을 산정하고 채무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추징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징이 유예된 세액⁹⁰⁾을 산정함
 - 추징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징이 유예된 세액은 관세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법정 관세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산정된 경우 발생함
- 다만, CCC 제220조 제2항에는 다음의 경우 이러한 추후산입(subsequent entry in the accounts)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⁹¹⁾
 - 법정 관세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관세를 계산하거나 또는 관세를 산정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결정이 차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은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행해진 경우
 - 납세자가 통관신고와 관련된 현행 입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선의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로 인해 법정 관세액이 산입되지 못한 경우

89) 김중근, 2011

90) the amount of duty to be recovered or which remains to be recovered, CCC Article 220 1.

91) ECC Article 220 2.

○ 관세법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일정 수준 이하의 관세액 산정 시에는 추후산입을 면제하는 경우

- 이 가운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관세채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관세당국의 불합리한 조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음
-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하여 선의로 행동한 납세자에 대한 면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당시 유효한 통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⁹²⁾

나.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가산세 등 감경규정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견해⁹³⁾가 지배적임
- 납세자에게 자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

92) (생략), subsequent entry in the accounts shall not occur where: the amount of duty legally owed was not entered in the accounts as a result of an error on the pa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detected by the person liable for payment, the latter for his part having acted in good faith and complied with all the provisions laid down by the legislation in force as regards the customs declaration.

93)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임⁹⁴⁾

-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⁹⁵⁾
- 품목번호 조회 결과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2개의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신고하는 등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⁹⁶⁾

□ 우리나라의 가산세 규정은 관세액의 부족 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관세법」 제42조 외 각 관련 규정에 존재하고 있으며,⁹⁷⁾ 본 조항에서만 ‘부당한 방법’에 기인한 경우 가산세 중과에 대해 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신고납부, 납세신고 등을 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⁹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⁹⁹⁾

□ 이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기간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음¹⁰⁰⁾

94) 관심 제2012-12호, 2012. 6. 28

95)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외

96) 같은 뜻; 대법원 2012.1.12선고 2011두13491판결

97) 제42조(가산세),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내지 제48조, 제97조(재수출면세),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등

98) 관세법 제38조의3 및 제42조

99)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관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 －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파기,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④ 그 외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함
- 기타의 가산세 규정은 특정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 사용 여부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부과됨
 - 예를 들어 재수출 면세 대상물품을 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은 고의성 여부 불문함
- 관세법의 신고서류 보관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보관과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음¹⁰¹⁾
 -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함¹⁰²⁾
- 우리나라 「관세법」 제268조의2 내지 제282조에 규정된 벌칙규정에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형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만 과실로 인한 벌금·과태료 감경을 규정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산세 및 벌칙 규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납세의

100)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101)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2호

102) 관세법 제12조

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미국 관세법은 처벌에 있어 사기, 중과실, 과실 등으로 세분하여 처벌 수준을 달리 하고 있음

□ 또한,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음을 먼저 발견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한다고 할지라도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이 다소 떨어짐

- 수정신고에 있어 기간이 단축되면 기간 이자가 감소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는 무조건적으로 부담해야 함

□ 그 외, 단순 과실에 의해 벌칙 대상에 해당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입자는 가산세 등을 경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기간 이자에 대한 부분만 감경), 자진 신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

2) 보완방안

□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미국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별하여 가산세 감경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로 인한 행위는 의도 자체가 상이하므로 그 둘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음

□ 또한, 벌칙 대상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추징 대상 세금은 징수를 하되 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자료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과실의 경우 벌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천

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능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성실한 납세자의 주의의무 명시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우리나라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의 신의성실원칙 적용 기준은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¹⁰³⁾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함
 -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함
 - 과세관청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인 관세당국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¹⁰⁴⁾로 해석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음¹⁰⁵⁾

103)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104) 재정경제부, 「주요 질문모음」, 관세제도과, 2006. 5. 30.

-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 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¹⁰⁶⁾
 - 과세관청의 오인에 의한 비과세 결정 이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¹⁰⁷⁾
-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며,¹⁰⁸⁾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함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분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창에 올려진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결정일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봄¹⁰⁹⁾
- 관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은 사실상 그 적용 기준이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뢰 정도에 의존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사안별 적용이 어려운 반면, EU 관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는 입증할 수 있으면 되고,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나타냄

1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 12159 판결

10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 3468 판결

10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 9360 전원합의체 판결

108) 대법원 88누5280외 다수, 1990.10.10. 선고

109) 조심2010관0027, 2010.04.29

- EU 관세법은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관세당국의 과실로 인한 추가적 과세를 차단하되, 이에 대한 요건 성립은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명문화함

2) 보완방안

-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에 선언되어 있는 신의성실원칙은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어, 적어도 관세법에 조건 또는 범위를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관세당국의 신의성실 주의의무와 납세자의 신의성실 주의의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관세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의성실 주의의무를 입증하는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라. 보정신청 기간의 연장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시,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보정신청 기간¹¹⁰⁾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족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정신청 기간 만료 후 세액 부족을 신고하는 것은 수정 신고이며, 이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110) 관세법 제38조의2

- 따라서,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스스로 관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부족 세액을 발견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사후 관세청의 심사를 통한 추징 등의 위험에 노출됨
 - 보정신청 기간이 과거 3개월에서 현 6개월로 연장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보정신청 기간 이후 3개월 동안의 가산세 50% 감면 기간이 없어짐¹¹¹⁾
- 반면, 미국은 물품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의 심사 및 사후조치 절차이며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의 청산에 따라 세관이 청산통보를 공지하면 수입 물품의 적법성을 포함한 관세 확정 등 세관의 모든 공식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¹¹²⁾

2) 보완방안

- 수입 통관 이후에도 상존하는 가산세 부담과 심사를 통한 추징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보정신청제도의 기간 연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관세법상 규정된 보정신청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시키거나 또는 6개월의 보정신청 기간 이후 가산세 감면 기간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11) 관세법 제38조의2 개정(2008.12.26)

112) 송선옥, 「미국 관세담보제도(Customs bonds)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08

3. FTA 관세특례법 규정 검토

- ☐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세법과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롯하여, 협정관세의 적용과 배제, 사전심사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까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는 관세법 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각종 의무, 처벌규정 포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 규정에 우선하며,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세법을 따름. 특례법은 관세법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진 부분이 있으므로 앞서 검토한 관세법령과는 따로 살펴보고자 함
- ☐ 미국과 EU 관세법 내 FTA 관련 규정의 수입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 관련 규정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봄

가. 외국의 FTA 관련 수입자 보호 규정

1) FTA 관련 벌칙 감경(미국)

- ☐ 미국은 사기, 중과실, 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 처벌 규정(미 관세법 제1592조) 내에 FTA 원산지의 허위 증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 미 관세법 제1592조 (f)항 내지 (l)항에는 FTA 체결 상대 국가별로 원산지 허위 증명 시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나 중과실, 과실에 의한 원산지 허위 증명(false

certification)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c)항¹¹³⁾의 규정을 따름

- 잘못된 정보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서면 통지할 경우(사전 고지)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증명 당시에는 올바른 정보였으나 추후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된 경우 자발적, 즉각적으로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 또한, FTA 적용에 있어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 원산지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수정통보(사전 고지)를 한 후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원산지 관련 서류 및 자료 보관과 관련된 처벌은 ‘제1508조 자료보관(Recordkeeping)’과 ‘제1509조 장부와 증거 심사(Examination of books and witnesses)’에 규정되어 있음
- 미 관세법 제1508조의 (e)항 내지 (k)항에는 각 FTA별로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l)항에는 이러한 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① 1만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 또는 ② 미 관세법상 일반적 자료보관에 관한 벌금, 이 둘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하고 있음¹¹⁴⁾
 - 의무 보관 자료는 주로 가격 및 구매 관련 자료 등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로, 보관 의무 기간은 대체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또는 통관완료일로부터 5년임

113) 〈표 IV-3〉 사기, 중과실, 과실 처벌 내용 참조

114) 미·캐나다 협정에 의한 자료의 미보관 시에는 1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2) FTA 관련 정당한 신뢰 보호(EU)

- 수입자가 FTA 적용물품의 원산지 판정 또는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견해에 따라 적용한 협정관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세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FTA로 인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계약상대국까지 확장되어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뢰하는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의 범위 또한 늘어남
- 납세자가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굳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호소하게 됨
 - 과세관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로는 각종 혜택의 취소,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 EC 관세법 Article 220 2 (b)는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요건으로, 이하의 내용은 협정관세 등의 특혜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동 규정에 당해 물품의 특혜(preferential status, preferential treatment, preferential arrangement) 대우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당국의 과실 및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을 규정함

가) 관세당국의 과실 범위

- 우선 관세당국 자신에게 귀속되는 과실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명문상 규정된 관세당국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3국 관세당국 및 수출국 관세당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¹¹⁵⁾

- 제3국 관세당국이 개입된 행정협력체제에 의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경우 제3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신고서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로 보아 추가 납부의무는 면책됨
 - 수출업체가 제공한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고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당해 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서 발급기관인 관세당국(the issuing authorities)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의무는 면책됨
- 또한 ‘관세당국’은 수입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 징수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한 신뢰를 유발한 당국, 즉 수출국 관세당국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음(C-348/89 Mercanarte)¹¹⁵⁾
- 또한 ‘과실’은 관세당국의 과실로 기인하여 발생한 처분 이외에 비과세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 판례도 있음
- 단순한 산술적 오류 외 법적용이나 해석의 오류를 포함하므로 당국이 구속력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상당 기간’ 부적절한 신고서를 발급한 경우 관세당국의 과실로 봄(C-251/00)
 - 부당한 통관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C-173/06)도 관세당국의 과실로 봄

나)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한 납세자에 대한 기준

- 명문상의 납세자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주장(plead good faith)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주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EC에 의해 공표된 경우는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봄¹¹⁷⁾

115) ECC Article 220 2. 2문 및 3문

116)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6

- 납세자는 거래기간 동안 당해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행사하였음(due care)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의성실원칙을 주장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수혜국에 의한 특혜관세적용 신청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EC가 EC 관보에 공표한 경우 이러한 신의성실원칙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례에 의하면 납세자의 주의 정도는 납세의무자가 의문이 발생할 경우 사전질의 등을 통하여 그러한 의심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소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함(C-250/91 Hewlett Packard)¹¹⁸⁾
- 만약 다른 회원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참작하여 품목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당시 유효한 통관규정 준수 요건은 유럽 관세법과 개별 회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이 납세자가 신청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 사후 검증 당시 새로운 사실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충족됨(C-250/91 Hewlett Packard)¹¹⁹⁾
-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 수준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 가능한 정보였다면 비록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일지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C-348/89 Mercanarte)
-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한 납세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 수 없었던 과실은 과실의 성격, 즉 관련 법령이 얼마나 복잡 혹은 단순한지 그리고 당국이 부정행위를 얼마나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C-250/91 Hewlett Packard)¹²⁰⁾

117) ECC Article 220 2. 4문 및 5문

118)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119)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120)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나. FTA 원산지 증명 관련 벌칙 감경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해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¹²¹⁾ 내 세액 정정·보정신청, 수정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¹²²⁾
 - 증빙서류 오류 통보는 체약국의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됨
- FTA 관세특례법에는 가산세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TA 적용과 관련된 수정 신고 및 경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의 가산세 규정(제42조)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¹²³⁾
 - 이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기간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함¹²⁴⁾
- 한편, 협정 또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

121)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에 오류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임

122) FTA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4호

123) 관세법상 가산세액과 같음.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124) 관세법상 가산세액과 같음.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며¹²⁵⁾ 과실 여부는 불문함

-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¹²⁶⁾
- 수입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오류는 수입국 관세 당국의 검증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나 검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그럼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수입세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세액의 과부족으로 세액 수정신고를 하는 수입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검증을 통해 수출국에서 작성한 원산지 증명에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부족세액 징수에 있어서는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함

125)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126)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1항

- 원산지증명서의 허위 증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에는 미국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진 신고에 대한 벌칙 경감 규정도 없음
 - 미국은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벌금을 면제해 줌

2) 보완방안

-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아 세관장에게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¹²⁷⁾을 검토할 수 있음
- 원산지 허위 증명의 경우, 악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벌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과 허위 증명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벌칙 부과에 있어서 고의적인 사기인지, 단순 과실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에 합리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 또한 수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사실을 사전 고지할 경우 벌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는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127)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다. FTA 이행 관련 신의성실원칙의 보완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에는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무를 따름
 -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칠레 FTA만이 원산지 사전판정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에는 이러한 명문상의 규정이 없음
 - 한·칠레 FTA 제5.9조(원산지 사전 판정) 제11항에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판정이 기초한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의 관계당국이 그 판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함
- 다만, 특정 FTA에 한하여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음¹²⁸⁾
 -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발생할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 － 필요 서류는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128)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3조

서류 및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임

-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한 · 싱가포르 FTA의 경우 60일, 한 · 칠레 FTA의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은 법리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신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의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야기됨
 - 신의성실원칙의 법리상 견해표명의 신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과세관청에 대해 호소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확대에 의한 관세당국의 확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임
 - FTA 원산지 검증 절차는 양 체약당사국 관세당국 간의 행정협력 및 절차의 성실한 이행에 기초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 FTA 원산지 검증으로 발생하는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개별적, 구체적인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함
-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와 원산지검증 절차에 대한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및 체약상대국의 위법 행위로 인한 수입자의 협정관세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자가 기한 내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 관세의 적용이 배제됨

- 신고한 원산지가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의 정보가 미비한 경우, 사전 심사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서면조사에 대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한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신 내용의 정보가 미비한 경우 역시 협정 관세 배제 사유가 됨
- FTA 관세특례법 내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또는 수출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수입자가 원산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¹²⁹⁾하고 있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한 수입자의 신뢰보호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임
 -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한 경우, 만일 그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다면 상대국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해 납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임
 -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 사후검증의 직무수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신의성실한 수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129) 한·칠레와 한·EFTA, 한·EU,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한·싱가포르 및 한·ASEAN FTA,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여, 세관 등 정해진 정부기관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 발생 시, 관세법을 준용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만으로는 수입자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 등 불이익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의성실원칙의 법리상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 체약당사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임

2) 보완방안

- FTA 관세특례법에 제3국 관세당국 및 체약상대국을 포함한 관세당국의 과실에 대한 수입자(납세자)의 면책을 명시하여 법규 준수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FTA 관세특례법의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적용제한 예외 규정 마련과 함께 납세자의 신의성실 입증의무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편, 과세당국의 과세권 확보 및 신의성실원칙의 제한적 적용을 위해 관세당국의 과실로 인한 납세자의 면책 입증 범위를 한정하여야 함
 - 유럽 관세법의 경우 거래기간 동안 통관규정 준수 및 특혜관세적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자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입증책임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의무로 명시하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납세자가 원산지 충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 성실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 수출자의 경우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여부,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이행

내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증받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수입자는 법규 준수 입증책임의 기준과 한도가 불분명한 상황임

- 수입자의 관세당국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의 직무 수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면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한 납세부담은 면제해 주어야 할 것임

라. 관세법과 FTA 특례법 간 벌칙 규정 형평성 조정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제22조에는 FTA 특례법에 의해 무역업자 등에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 성실한 원산지 증명 의무, 관련서류의 보관 의무 등의 위반한 시 적용할 벌칙을 규정함
- 제23조에는 관세법과 유사하게 양벌 규정¹³⁰⁾을 두어 위법행위 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 주체(법인 또는 개인)를 함께 처벌하고 있음
- 제24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서류의 미제출, 검증의 기피나 거부, 또는 방해 등과 같이 다소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13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표 IV-8〉 FTA 관세특례법 상 처벌의 예

조항	위법 행위	처벌 내용
제22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 취급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 • 관련 서류의 미보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세율 적용 물품이나 관세 면제 물품은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양벌(행위자 외 업무 주체 처벌)
제24조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율이 낮은 기타 용도에 승인 없이 사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FTA 관세특례법

- ☐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관세법의 그것과 양형 또는 제재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해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과 달리 경미하게 또는 높게 규정한 경우가 있고, 관세법에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아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 관세법에는 관세포탈죄 등과 그 미수범에 대하여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¹³¹⁾ FTA 관세특례법에는 병과 규정 및 범죄 교사·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131) 관세법 제275조

〈표 Ⅳ-9〉 유사 위반사항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의 처벌 및 과태료 비교

위반사항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비밀 누설 관련	•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비밀 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 제1항)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 또는 도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68조의2 제2항)
서류의 제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제2항) - 정해진 기간 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1항)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 시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 등 관계자에 대해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출·보고, 그 외 명령 미이행, 거짓 보고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3항) • 세관공무원은 필요 시 수출입업자 등 관계자에 질문이나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거부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3항)
조사의 거부, 기피	•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1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3항)
서류의 보관 의무	• 수입자의 서류 보관 의무(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를 위반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제1항 제4호) (*서류: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	• 수입자의 서류 보관 의무(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2항 제2호)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 •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7조 제4항)
용도세율 적용물품 양도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동일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무단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2항)	• 규정 삭제
재수출 감면물품 양도	• 재수출감면물품을 직접 수입 시 감면이 가능한 자에게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2항)	• 재수출감면물품을 직접 수입 시 감면이 가능한 자에게 양도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7조 제3항)

자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재구성

- 관세법에서는 미수범 등의 규정에 관세포탈 등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과 미수범의 본죄 처벌, 예비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정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¹³²⁾ FTA 관세특례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2) 보완방안

-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함
- FTA 관세특례법에도 병과 규정을 두어 의도적으로 관세포탈을 시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관세포탈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도과에 대한 관세부와 제척기간 도입(2012년 세법 개정안)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 기간¹³³⁾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¹³⁴⁾

132) 관세법 제271조

13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3개월 내지 12개월 이내로 체결국에 따라 그 회신 기간이 상이함(회신 기간: EFTA 10개월, 아세안 6개월, 인도 3개월, EU 10개월, 페루 150일, 미국 12개월)

-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¹³⁵⁾
-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5년의 별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포탈하지 않은 경우는 2년이 적용됨
 -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신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도과 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대응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입국의 정당한 과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음¹³⁶⁾
- 그러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됨
 - 회신 지연이 당사국 내 쟁송발생 등 수출국 관세당국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단 몇 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회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134)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35) 관세법 제21조

136) 한국조세연구포럼,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2011.12

- 수입자가 선의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에 대한 책임을 수입자에게 지워 결과적으로 과세권의 남용으로 인해 수입자가 금전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수입국에서 당초 기한 내 미회신을 이유로 과세한 후, 수출국에서 소송 등으로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늦은 회신을 하는 경우, 귀책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됨
- 또한, 회신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결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외교적인 마찰로 발전될 소지가 있음

2) 보완방안

-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회신한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해당금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하도록 예외를 규정해야 함¹³⁷⁾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2012년 세법 개정안에 조사결과 회신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예외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관세법 제21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날’을 규정함
 - FTA 관세특례법상 회신 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하거나, 체결상대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의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¹³⁷⁾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 또한 체결상대국에서 쟁송을 통해 결정된 법원 판결은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국에서 각종 법률적 수단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V. 관세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1. 관세보험의 도입 필요성

- ☐ 수입업체들은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금전적 추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수입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신상품의 급속한 개발, FTA의 확대에 의한 원산지 사후검증 증가 등에 따라 위험 요소와 불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입자 스스로 이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사전확인제도(품목분류 사전 심사, FTA 원산지 사전 심사 등)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V-1〉 최근 5년간 기획 및 법인심사 추징금액

(단위: 억원)

연도	기획심사 ¹⁾ 추징금액	법인심사 ²⁾ 추징금액
2008	1,208	—
2009	1,824	—
2010	3,010	270
2011	3,414	334
2012(1~8월)	1,173	540

주: 1) 협력의무 미이행, 탈세제보·정보분석 등 법규위반 가능성 높은 업체 선정

2) 2010년부터 시행.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업체 대상, 신고성실도·법규준수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자료: 세정신문

- 또한, 현행 제도는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수입자 구제 및 보호 방안 중 하나로 관세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음
 - 수입자가 관세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관세보험증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하고 수입 통관을 하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나 관세보험제도는 미국, EU, 호주 등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도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 분야 이외에도 보험의 법리와 관련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며, 업계 및 관세 당국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다양한 보험의 형태 중 어떠한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 시 수입자의 저항 등을 고려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 이하에서는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세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보험의 형태(보증보험 또는 손해보험)와 실정에 비추어 관세보험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함

가. 수입자 보호 측면

- 관세부과 제척기간(2년 내지 5년) 동안 수입 업무의 이행 후 일괄적으로 거액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수입업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수년간의 수입 업무 도중 예기치 않은 관세 등의 추징으로 인해 사업자는 추징액이

과다할 시 최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음

- 수입자는 관세보험의 가입과 활용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사전에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통해 수입자는 보증을 이용한 담보력 또는 자본력 확장, 이를 근거로 대외적인 신용도를 증진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인 채권자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 간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도 제고를 통해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
-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의무만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보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낮음
- 한편,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이라면 수입자는 추징 등 보험사고의 발생 시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할 것임

나. 관세채권 확보 측면

- 관세보험은 과세당국의 채권 확보 측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음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의 경우 수입자가 계약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인 과세 당국이 입는 손해를 보상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수입자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이므로 역시 과세당국의 채권확보에 도움이 됨

- 수입자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액이 큰 경우 업체의 금전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
- 또한, 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수입자로 하여금 일정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특정 의무를 보험의 조건으로 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보험은 일종의 담보의 기능을 지닐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개인이 아닌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추징 등)의 발생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수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금전을 확보한 수입자를 통해 관세채권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짐

2.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가. 보증보험의 의의

1) 개요

- 미국은 보증증권의 성격인 bond제도를 운영하여¹³⁸⁾ 채무 이행 수단으로 금전 또는 법인의 보증(corporate surety)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EU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공하도록 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Bond와 보증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상품을 총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보증보험 상품 중 Surety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 두 가지로 쓰임
 - 광의의 보증보험에는 Surety,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등이 포함됨
-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보증은 보험의 형식을 빌어 영위하는 법인보증제도로써 보험과 보증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증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임¹³⁹⁾

138) 미국은 90%가 넘는 수입 신고 건이 CBP Bond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이 반출되거나 보세운송됨.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비교분석」, 『무역연구』, 2009년 4월

139) 보험개발원(1997), p.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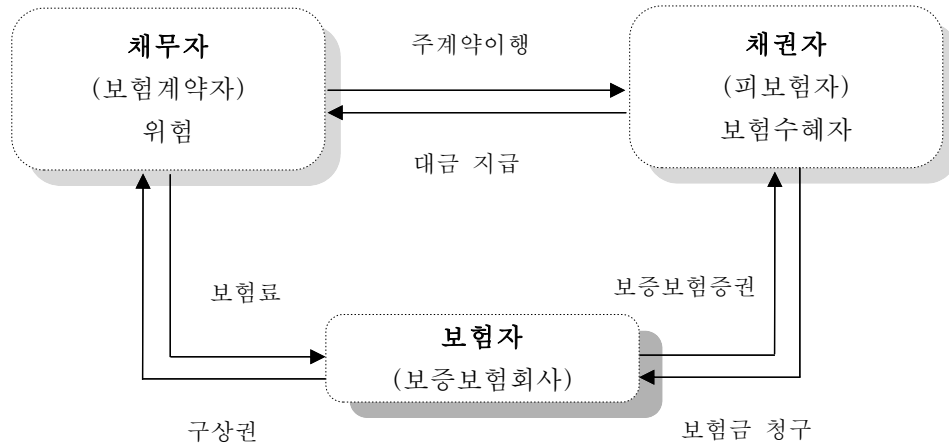
- 보증보험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일반손해보험처럼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형태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며, 내용이 보증이므로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적용됨
- 보증보험의 본질적 장점으로서는 채무자의 담보력 또는 자본력을 확장하는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금융혜택 및 거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이 있음
- 채권자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음¹⁴⁰⁾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수입자 등)와 피보험자(과세관청)가 채권채무관계에 놓이게 됨¹⁴¹⁾
 - 보증의 계약당사자는 채권자(obligee), 채무자(principal), 보증인(surety company)이며 보험의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계약자임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위험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으며 위험의 최종 부담자는 결국 보험계약자 자신임¹⁴²⁾
 - 보험자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140) 김기호,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부보가능한 위험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과 보증보험」, 2004.02

141) 김만홍(2005), p. 265

142)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p. 20

[그림 V-2] Surety 계약 시 3자 관계



자료: 정우동(2005), p. 19

-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취급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짐
 - 보증보험계약의 인수 시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이행능력 등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며, 보험계약자의 인격, 지급능력, 자본력, 담보력, 경제상황 등을 중요시하게 됨¹⁴³⁾
 - 손해보험과 같이 예정원가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음
- 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음¹⁴⁴⁾
- 보증보험의 요율체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같이 요율수준이 채권추심

143) 나동민(2006), p. 21

144) 대법원 1996.9.29. 선고 94다47261 판결

시스템, 보험계약자의 사업의 특성, 보험계약자의 주요 고객, 수출국가, 유보된 위험규모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⁴⁵⁾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보증 제도 비교

-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가운데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규정하고 있음
-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는 납세담보제공의무 또는 납세보증인 선정의무가 있는 내외국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납세 담보제공의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세의무를 납기 안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함
- ☐ 보험가입금액은 관세 납세담보인 경우 당해 세액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금으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국세납부보증으로서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납입할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적용요율¹⁴⁶⁾을 곱한 금액으로 함
- ☐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가산함
- ☐ 보험의 청약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및 채권보전을 거쳐 보험료의 영수증 및 증권을 발급함¹⁴⁷⁾

145) 나동민(2006), p. 48

146) 기본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659~1.905%가 차등 적용됨

- 보증보험 청약서, 약정서, 주계약서 등 제출된 서류 및 보험계약자의 업력, 매출액, 자본규모 등 신용도를 분석함
 -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는 미국 및 EU의 보증서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계약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음
 - 모두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

-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감독법상 분류기준에 의해 보증보험을 크게 보증보험(Surety Insurance), 보증증권(Bond), 신용보험(Credit Insurance)로 구분함¹⁴⁸⁾

-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납세보증증권 및 보증서는 보증보험, 미국의 CBP Bond는 보증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은 채무의 불지급, 계약의 불이행 등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증보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보증증권의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보증인이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계약(법령에 의한 의무의 보증인 경우 관련법규), 채무자와 보증인은 보증위탁계약,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계약 관계에 있음¹⁴⁹⁾
 - 보증보험은 채무자와 보험자가 계약당사자이며 보증증권은 채권자, 채무자, 보험자를 계약당사자로 함

147)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148) 보험개발원(1997), p. 33

149) 보험개발원(1997), pp. 15~16, 34

- 보증증권은 보상하는 방법이 다양하며 계약상 보증보험의 면책과 같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어 채권자에게는 보증보험에 비하여 채권담보로서의 효력이 높은 수단임¹⁵⁰⁾
- 한편 신용보험은 물품매매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고객(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공급자(Seller)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¹⁵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가입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함
- 신용보험은 계약형태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점,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담보 위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과 다름

〈표 V-2〉 보증보험의 유형

구분	보증보험	보증증권(Bond)	신용보험
계약당사자	채무자(피보증인)와 보험자	채권자, 채무자, 보험자	채권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보험자
계약형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보험료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예정원가
보험사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담보위험	보험계약자의 채무이행 능력	채무자의 채무이행 능력	채무자의 지급불능

자료: 보험연구원(1997), p. 15

150) 나동민(2006), p. 23

151) 정우동(2005), p. 20

- 우리나라는 담보제공자로 납세의무자 및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인이 연대 채무를 가지나, 미국과 EU의 경우 보증보험의 채무자에 수입신고인으로 관세사가 포함되어 이들에게 담보제공으로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및 EU의 경우 관세사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세사가 자기의 명의로 담보로 즉시반출 신청 또는 수입신고하더라도 납세신고는 수하인의 명의로 담보로 신고할 수 있음

- 조사대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보험의 보증인은 은행, 보험사 등 민영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 국가에서 승인된 업체로 함
 - 미국 CBP Bond의 보증인은 재무부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로 함
 - 1차적으로 개별 주의 보험감독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2차적으로 연방정부 관련 각종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재무부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함¹⁵²⁾
 - EU의 경우 보증인은 관세당국에 의해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지급보증서가 50% 이상을 차지함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법에 규정한 법적 요건 및 재무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허가절차를 거쳐 국제·관세청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 또는 은행 등으로 함

- 보증보험이 선진화된 나라의 보증보험사 소유지배구조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는 수요자들의 공동출자방식을 예외 없이 취하고 있음¹⁵³⁾
 -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공익성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 반면 국내 보증보험산업은 행정규제에 의해 서울보증보험만 운영되고 있음¹⁵⁴⁾

152) 1935년 Miller Act에 의해 보증보험사업을 은행에는 금지하고 보증보험을 허가받은 보험사에만 허용하도록 함

153) 정우동(2005), p. 28

154) 차일권, 「VAR모형을 이용한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8권 제

- 민영보증시장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 등 이해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나.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1) 외국 제도의 변형 도입

- 미국, EU, 영국 등 조사대상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Bond(보증증권)를 통관 시 활용하는 제도를 변형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담보의 일환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채무자의 범위가 상이한 등 선진국의 보증보험제도와 차이점을 가짐
- 주요국 Bond의 담보제공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자 이외에도 관세사가 보증보험계약의 채무자로서 담보로서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강제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담보제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자로서 담보조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함
 - EU는 간접대리인 경우 수입신고인의 연대채무가 가능하며 간접대리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 그러나 미국 및 EU, 영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증제도는 보증보험의 채권담보로서의 효력이 높은 기능이 있는 Bond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민영 보증보험 시장의 한계

- 우리나라는 아직 보증시장이 선진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이 단일 보증기관으로서 담보 종류 중 하나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함
- 일부 선진국의 보증보험의 발전은 보증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형성되고 경제주체의 자생력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증보험은 아직 정책적 보증기관으로 남아있음¹⁵⁵⁾
 - 미국의 경우 CBP에서 인가를 받은 270개의 보험사가 통관 시 보증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2012년 기준)
-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보증보험의 높은 리스크 등을 이유로 민영 보증보험 시장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임¹⁵⁶⁾
 - 보증보험의 제공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이라는 신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함¹⁵⁷⁾
 - 통상적으로 높은 신용평가등급이나 지급여력 수준을 심사함
- 보증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체제로 보증보험시장을 운영하여 보험료율 인하 및 서비스개선 등 소비자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본 바 있으나 아직 이견이 많음

155) 정우동, 「주요국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손해보험』 통권 제439호, 2005.06

156) 보험뉴스, 2011. 6., http://www.bohum1.co.kr/know/insuranceNews.htm?num=235&bo_num=238

157) 차일권(2007), p. 86

- 추후 우리나라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면 저렴한 요율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아직은 무리가 있음

3) 고의 사고에 대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 문제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즉 수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뿐, 의무 이행 과정에 있어 고의성 여부는 따지지 않음
 - 따라서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¹⁵⁸⁾ 내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담보해주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과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주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해이)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¹⁵⁹⁾
 -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이미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불량 위험을 가진 장래의 잠재적 보험계약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영·미에서의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¹⁶⁰⁾
 - － 미국, 영국의 보증보험은 신용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채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내지 위험의 실현가능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 관세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입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

158)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159) 김기호, 2004, 2

160) 김기호, 2004, p. 80

상으로 인해 관세행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음

- 수입자는 신고 의무 이외에 기타 확인 등의 성실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수입자로 인해 오히려 보험 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완벽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정직한 계약 체결 의무와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스스로 추징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입자는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것이며, 추징의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수입자는 가입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숨은 의도는 보험자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역선택¹⁶¹⁾)으로써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161)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의미함

3.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가. 손해보험의 의의

- ☐ 손해보험이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填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임¹⁶²⁾
 -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 －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傷害保險)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 손해보험에 해당함
- ☐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됨
- ☐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 보험기간에 따라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나뉨
 - 날짜를 확정하여 일정기간을 담보하는 것을 기간보험이라 함
 - 일정구간을 담보로 하는 것을 구간보험이라 하며 적해보험, 항해 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음
- ☐ 보험은 다수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국가 감독규제가 강하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함

162) 「상법」 제665조

1) 보험제도의 특징

- ☐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우연성의 요소로서 발생자체의 우연, 발생시점의 우연, 발생범위의 우연이어야 함
 - 필연적인 위험, 예측가능한 위험, 의도적인 위험은 보험으로 취급할 수 없음
- ☐ 보험사고는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만 대수의 법칙¹⁶³⁾에 의한 통계적 확률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보험은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특징이 있음
- ☐ 위험의 동질성이란 보험사고의 성질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동질적이어야 위험의 결합이 가능해지며 이에 대한 사고의 발생 빈도에 대한 통계적인 확률계산이 가능함

2)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 ☐ 동일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각출한 보험료에 의하여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즉 위험분담의 제도가 손해보험임
- ☐ 보험은 발생된 손해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시키는 대신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

163)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하여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전체로서는 발견될 수 있음

액으로 서로 나누어 분담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임

○ 순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의 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임

- ☐ 보험에 가입한 사람, 즉 피보험자는 사고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으면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리임
-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한 사람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자임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자이며 보험료 지급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의무가 있고, 보험금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만지환급금 청구권(장기보험)등의 권리를 가짐
-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며 보험계약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음
- ☐ 보험청약 시에 위험사정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부실한 고지를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보험가액(시가)과 보험금액(보험자가 보상하는 한도)이 일치하면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 되나, 보험가액이 많으면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 되어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보험금액이 적으면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 되어 보험에 붙인 비례만큼만 손해를 보상받게 됨
- ☐ 상법에 의해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등의 사

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¹⁶⁴⁾

- 그 외에도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함

- 손해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념은 보험의 종류, 요율인가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여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됨
 - 종류로는 보험회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요율,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서로 요율을 협정하는 협정요율, 요율산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계당국에 신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되는 인가요율 등이 있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임
-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비용, 인건비 그 밖의 사업비로서 부가되는 부가보험료를 포함함
-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을 의미하기도 함
-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 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분실하여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64) 「상법」 제666조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보험목적의 소재기와 내용, 보험 계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일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일정한 사실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의 구내를 조사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등

나.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 관세보험을 손해보험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수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됨
- 앞서 살펴본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이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담보 능력을 확장하여 수입자를 지원한다면,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은 사후적으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임
- 수입자가 금전적인 추징 위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동반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음

- 관세의 납부, 통관 절차의 이행 등 업무 성격상 관세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보험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이하에서는 관세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 검토를 해보고자 함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 관세보험에 가입한 수입자는 보험을 믿고 보험사고 방지 노력을 이전보다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수입자에게는 금전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창고로 절약 등을 목적으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수입신고할 여지가 발생함
 - 수입자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을 따로 신청하여 확인받을 유인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사전 확인 노력 역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하며, 수입자는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수익자(beneficiary)로서 최대한 보험을 활용하려 할 것임
- 관세보험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시 일정 부분을 공제 후 지급하는 보험금 공제제도, 차기 연도 보험료 할증, 보험금의 상한액 지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2) 관세사 배상책임보험과 중복 적용

- 현재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은 업무를 수탁받은 관세사의 과실로 인해 수입자가 금전적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업무를 위탁한 수입자 역시 관세보험에 따로 가입한다면 하나의 수입통관 건은 2개의 보험이 동시 적용받게 됨
- 이 때, 추징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에게 중복 보상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업무에 참여한 각 주체별 과실 여부 판별이 필요함
 - 관세사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과 수입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비례 보상하여야 할 것인바, 보험사가 양측의 과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분해 보험금을 산정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
- 이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양 보험에서 각 주체에게 보상하여야 할 보험금 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수입자가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3) 고의성 여부 판별과 사고의 우연성

-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에서는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는 금전 보상을 줄 수 없을 것이므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별해 내는 일이 중요할 것임
 -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본인이 초래한 사고이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

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수입 통관은 업무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고 여러 절차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수입자의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음
-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 이외에도 국내·외 운송인, 통관대리인, 관세당국 등 다수가 업무에 관여되어 있으며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에서부터 품목분류, 세율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함
 - 그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 사고는 품목분류 오류, 관세감면 및 FTA 특혜세율 신고 오류, 관세 부과항목 신고 누락, 관세가격 등 입력 오류, 환급소요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 등 사고 발생 요인은 다양함
- 또한 보험사고는 사고의 발생여부 및 발생 시기, 손해의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업무를 행하는 통관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불확실성(우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움

4) 보험요율 책정 및 보장 범위 결정

- 각 수입자가 지닌 보험 사고의 위험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요율 책정이 어려울 수 있고, 업체별로 상이한 특정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업체별 수입 규모와 수입하는 품목이 상이하며 수입 업무를 이행해 온 기간이 다르고, 실질 업무수행자의 경력에도 차이가 나는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률과 연관함

- 보험요율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법규준수도, 수입하는 물품의 가액과 통관 이력, 이전 연도의 보험금 수령 여부와 그 금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그 외에 AEO 인증 획득 여부, 무사고 기간 등도 보험요율의 할인 또는 할증 여부 결정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고 시 발생한 금액 전부를 보상할 것인지, 계약 전 지급 보험금의 상한선을 두어 일부 보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보험요율 책정이 가능함
 - 보험 계약의 체결 전, 보험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도록 계약을 체결(일부보험)할 것인지 또는 보험가액 전부를 보험금액으로 계약 체결(전부보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관세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보험 사고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고에 대한 선택 가입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5) 의무 가입 여부 및 저항 방지 방안 고려

- 손해보험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시 모든 수입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추가 비용의 발생 및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수입자에게 이를 강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을지가 문제됨
- 선택적으로 자율 가입하게 된다면 장기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이미 심사 등

을 통해 수입 내용에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 수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본 사업 시장에 진입을 꺼릴 것임

- 수입 건수가 적고 물품 신고 가액이 낮은 업체 등 비교적 추징 위험도가 낮거나 추징을 받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크지 않은 업체는 보험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율 가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물품의 국내 판매 시 보험료를 물품 가격에 전가하여 판매하려 할 것이며(물품 단가를 높임), 이는 시장 내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음

□ 반면, 의무 가입을 강제화한다면 수입자는 일정 기간마다(월 또는 년 단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입 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항의 우려가 있음

- 추징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수입자일수록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험에 부보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 가입을 강제할 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자연적으로 확보되므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상품을 구성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추후 운영 결과,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험사의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도입된다면 수입자 또는 보험사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한 예로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처럼 관세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관세보험을 도입한다면 최소한 둘 이상 다수의 보험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입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하나 또는 소수의 보험사만이 관세보험을 운용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수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수입자 보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6) 보험사의 인수 여부 결정과 역선택 문제

- 보험 가입 대상자의 사고 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보험사는 사고 확률이 높은 수입자를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수입자에게 저하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문제가 됨
- 보험 상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는 인수 전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적 저위험 수입자에 한해 보험 요청을 수락할 것임
 - 보험사고가 잦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수입자의 보험은 보험사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므로 인수를 기피할 것임
- 따라서 보험사는 위험이 낮은 수입자 여부를 판별할 기준과 주체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
 - 관세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특정 기준을 세워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 위험 판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수입자의 법규준수도, 과거 추징 실적, 수입실적 및 납세 실적, 수입 품목, 수입업 영위 기간 등이 있음

- 그러나 인수 시점에서 보험회사는 수입자의 과거 추징·처벌 이력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차후 추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세관의 심사 실시 전에는 알기 어려움)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 관련 전문성이 요구됨
- 기타의 보험처럼 고지의무를 명시화한다고 하더라도 통관 업무 특성상 과거의 추징·처벌 이력 등은 파악이 용이한 정보여서 고지의무를 통해 보험사가 얻는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고지의무에 과거 이력 외 다양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수입자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로부터 고위험 업체로 판단되면 인수 거부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험요율 책정으로 수입자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 보험금 지급 결정 및 시기

-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당국의 심사를 통한 결정사항, 즉 추징 결정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성립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세관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 결정을 받은 수입자는 신속하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할 것임
- 그러나 기타 손해보험과는 달리 관세보험은 사건이 추징액 발생과 보험금 지급으로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으로 장기간 동안 심판, 소송까지 이어지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추징 취소)도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음
 - 추징액이 큰 경우 및 장기간(1~2년) 경과 후 결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도 상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보험사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기간에 따르는 이자 등의 발생 시 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함

4. 검토 의견

- 관세보험의 도입 효과 및 실효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관세보험의 도입 전 관련 제도 및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만일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도입한다면 수입자가 채무자가 되고 과세당국이 채권자가 되는 구조로 사실상 사후에 금전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는 기능에는 취약함
 - 수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증인인 보험사가 과세당국에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단일 보증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관세보험에 대한 보증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Bond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보증시장이 발전되어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 고의로 인한 사고도 담보해주는 보증보험의 특성상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은 선량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보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음
-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관세징수의 체납은 절반 이상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에 대한 징수 실패로 발생함¹⁶⁵⁾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CBP의 체납액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체납액은 280억달러에 달하는 51%를 차지하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손실 위험에 있는 반덤핑·상계관세 체납액은 약 1조달러에 달함

□ 이는 이론적으로 Bond를 매번 건별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정세액에 대한 개별담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과 최종 관세액이 결정되는 조사 종료시점까지 평균 3.3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자는 납부 능력이 없거나 납부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미 파산한 경우가 발생함
-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Bond 제도는 포괄담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반면, 개별담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개별담보 금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남¹⁶⁶⁾

□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개별담보의 징수 관리가 부실한 사유 중 하나로 1차적으로는 CBP의 중앙부서 없이 개별 항구세관장의 분산 행정과 관리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판단함

-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서명 또는 거래번호 기재 오류 등 담보사항의 오류, 미비(incomplete), 분실로 인하여 수백만달러를 대손처리하였음
- 게다가 CBP는 담보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18% 정도는 관세사에게 보관하도록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남

165) 2010년 CBP의 세수 부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에서 CBP bond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166) 2009년 한 해 동안 개별담보로 수령된 12조달러 가운데 약 8조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담보로 추정되며, 다른 정부기관의 요건확인으로 인해 약 1.5조달러는 손실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차적으로는 수입자와 관세사 간에 잠재적인 결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림
 - 수입자에게는 담보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개별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담보금액 등을 납부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이득임
 - 관세사가 CBP를 대신하여 bond 기록을 보관하고 수입자의 추가세액에 대한 개별담보 제공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포괄담보 또는 신용담보업체가 수입신고를 한 이후 FTA 협정관세,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인하여 5년간의 관세액을 추징받는 경우, 현행 미국 개별담보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추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입자의 개별담보 제공과 관련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세액 납부가 불가능하여 관세당국의 체납액으로 귀결되는 상황으로 이어짐
 - 미국의 경우 기획심사제도(FA: Focused Assessment Program)를 매년 실시하여 내부통제 수준과 과세탈루 위험분야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덤핑·상계관세분야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함

- 또한 우리나라는 무담보원칙으로 포괄담보 및 신용담보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보험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현행 무담보원칙의 담보관리를 전제로 할 수 없음
 - 담보의 종류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대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보증계약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이 존재하여야 함

- 보증보험 형태의 경우 채무자인 수입자 이외에도 관세당국의 보증계약 당사자가 되는 보험사의 신용도 평가가 현행 무담보원칙에서 이루어지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한 신용도 평가보다 채권확보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보증보험은 채무이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전제로 하여 담보물 제공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계약구조상 담보가 존재할 수 없음
- 한편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가정하면, 우연한 사고와 사고의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손해보험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현존 보험 제도에 단순 대입이 어려우며,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보험 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유인이 있음
 - 보증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특성과 관련, 관세보험 사고는 완전히 우연하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입자의 고의성 여부 판별에도 어려움이 있음
-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험요율을 좌우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며, 따라서 보험요율 책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자율가입 또는 의무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각각 수입자 간 형평성과 저항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국내의 실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세보험의 도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Ⅵ. 결 론

- 첨단제품의 개발, FTA 체결 및 적용 확대 등 환경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넘어서도록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관세부과제척기간인 2년 또는 5년에 대한 추정금액은 수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또한 판결이 쉽게 나지 않는 사안이 많아 장기간 경영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의 필요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 양자를 조화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음
- 추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관련하여 살펴본 주요 사례 중 스위스 금괴 사건은 FTA 협정관세 배제적용으로 인한 차액이 부과된 사례임
 - 결국 상대국 법원에서 스위스산으로 결정됐으나 원산지 검증 회신 기간(10개월) 도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임
 - 수입자가 물품을 스위스산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만을 취소하였으나, 추정으로 인해 폐업에까지 이른 업체도 있음
- 신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업체 간 견해차로 분쟁을 벌인 MCP 사건은

결국 법원이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여 추징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준 사례임

- 기타 사례는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미회신,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수 등 수입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FTA 협정 적용을 배제받아 추징당했던 사건들을 소개함
- 한편 과세당국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주요국과 관세 채권 확보 수단인 담보제도를 비교해 보고, 주요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시 담보 종류 중 하나로 납세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경우 보증보험의 하나인 보증증권(Bond)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국의 보증보험은 수입자와 관세사(신고인)가 모두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이 채권자가 됨. 보증인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수의 보험회사임
 - 따라서 채권확보와 동시에 납세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신용도 증진이 가능함
- 이러한 보증보험은 보증의 기능을 보험 방식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인 수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 수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고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관련 규정을 외국의 특징적인 규정과 비교하여 보았음
-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제도는 통관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 발생 시 결과적으로 수입자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음

- 그러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세사 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현재 한 곳이라는 점과, 수입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
- 관세법 규정의 검토 결과 미국은 일반적인 벌칙 부과와 FTA 이행상 일부 위법 행위에 있어 고의·중과실·과실 여부를 따져 차등적인 벌칙을 부과하며, 위법 사실을 본인이 자진하여 고지(disclosure)한다면 벌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줌
 - 우리나라도 가산세와 벌칙 부과에 있어 과실 여부에 따른 벌칙 감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납세자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 감경 및 면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은 수입 통관 후 1년의 정산(liquidation)기간 내 세관 심사 및 관세 등의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수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6개월인 보정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2008년 폐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켜 보정신청 기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도록 함
- EU는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는 본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며,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음
 - 주로 적용 기준을 판례에 두는 우리나라도 신의성실 주의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FTA 적용 시 상대국 관세 당국도 포함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EU는 FTA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체결상대국의 관세당국까지 신의성실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인정범위가 넓음(우리나라는 상대 관세 당국 제외)
 - 우리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있어 EU에 비해 다소 협소한 범위 규정으로, FTA 협

정 적용 시 수출자나 수출당국의 과실까지도 우리나라 수입자가 모두 책임지도록 되는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외에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에 규정된 유사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하고,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회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의 도입은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상태임

□ 마지막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음

○ 미국, EU 등 조사대상 주요 국가는 아직 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효성 등의 파악은 사실상 어려움

○ 주요국이 사용 중인 보증증권은 우리나라의 납세보증보험에 비하여 채권담보로서의 효력이 높은 수단이나 본질적으로 수입자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 수입자의 금전 보호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관세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발생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일반 보험 사고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므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제도의 활용을 통해 수입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도 수입자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채권 회수 불가능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수입자의 저항 문제가 예상되며 저위험 수입자의 가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 보증보험 형태의 보험 운용 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부족 문제, 손해보험 형태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의 복잡성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됨

- 선진국의 보증보험의 활용은 보증시장의 일정 규모 확보와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는 맞지 않음
- 어떠한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수입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추징의 증가,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 고위험 수입자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악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제 도입할 경우, 비용의 발생은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기타 국가와의 통상 마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자 보호 제도로서의 관세보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 외국의 실제 운용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도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 강홍중,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0
- 관세청, 『2008 관세행정심판사례집』, 2009. 4
- , 『2010 관세행정심판사례집』, 2011. 11
- , 『소급과세금지원칙 vs 신의성실원칙』, 2007. 11
- , 『FTA 원산지 검증 현황과 대응전략』, 2011. 11
- 김기호,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부보가능한 위험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과 보증보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만홍, 「보증보험과 책임보험의 비교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11호, 2005
- 김재식, 「품목분류 왜곡을 통한 농산물의 관세회피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2008
- 김중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4. 8
-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관세학회지』 제12권 3호, 2011
-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비교분석」, 『무역연구』, 2009. 4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KDI, 2006
- 보험연구원,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1997
- 성백운, 『관세추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
-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과 과제」, 『계간 관세사』 2008년 신년호

-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정우동, 「주요국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손해보험』 통권 제439호, 2005. 6
 정재호 · 김태훈,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11
 정지영, 「가산세 부과에 예외사유에 대한 검토」, 『변호사』 제34권, 2004
 차순규, 『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 최천식,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관한 소송건 소고」, 『관세와 무역』 제38권 제7호 통권 제429호, 2006
 한국조세연구포럼,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2011

Tasker, Joseph, 2001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BUILDING A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HILE AVOIDING CUSTOMS CLASSIFICATION DISPUTES*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BP bonds*, 2006

조세심판원, www.tt.go.kr

조세일보, www.joseilbo.com

세정신문, www.taxtimes.co.kr

경기일보, www.kyeonggi.com

매일경제, www.mk.co.kr

관세청, www.customs.go.kr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영국 국세 · 관세청, <http://www.hmrc.gov.uk/>

EUR-Lex, <http://eur-lex.europa.eu/>

〈부록 1〉 미국 담보신청서 양식(1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50 Exp. 03/31/2014

CUSTOMS BOND
19 CFR Part 113

CBP USE ONLY	BOND NUMBER (Assigned by CBP)
-----------------------------	-------------------------------

Broker Filer Code: _____ Surety Reference Number: _____

In order to secure payment of any duty, tax or charge and compliance with law or regulation as a result of activity covered by any condition referenced below, we, the below name principal(s) and surety(ies), bind ourselve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amount or amounts, as set forth below.						Execution Date	
SECTION I – Select Single Transaction OR Continuous Bond (not both) and fill in the applicable blank spaces.							
☐ SINGLE TRANSACTION BOND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 secured by this bond (e.g., entry number, seizure number, etc.)				Transaction Date	Port Code	
☐ CONTINUOUS BOND	Effective Date	This bond remains in force for one year beginning with the effective date and for each succeeding annual period, or until terminated. This bond constitutes a separate bond for each period in the amounts listed below for liabilities that accrue in each period.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is bond must be conveyed within the period and manner prescribed in the CBP Regulations.					
SECTION II – This bond includes the following agreements. Check one box only. (Except 3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3.)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 1	Importer or broker\$113.62			☐ 8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113.70 -Single Transaction Only-		
☐ 1a	Drawback Payments Refunds\$113.65			☐ 9	Neutrality\$113.71 -Single Transaction Only-		
☐ 2	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113.63 (Includes bonded carriers, freight forwarders, cartmen and lightermen, all classes of warehouse, container station operators) -Continuous Bond Only-			☐ 10	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113.72 -Single Transaction Only-		
☐ 3	International Carrier\$113.64			☐ 11	Airport Security Bond.....Part 113 App A		
☐ 3a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113.66 -Continuous Bond Only-			☐ 12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Exclusion Bond.....Part 113 App B		
☐ 4	Foreign Trade Zone\$113.73 -Continuous Bond Only-			☐ 14	In-Bond Export Consolidation Bond		
☐ 5	Public Gauger\$113.67			☐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 6	Wool & Fur Products\$113.68 Labeling Acts Importation -Single Transaction Only-			☐ 16	Importer Security Filing (ISF)Part 113 App D		
☐ 7	Bill of Lading\$113.69 -Single Transaction Only-			☐ 17	Marine Terminal Operator -Continuous Bond Only-		
PRINCIPAL			By checking the box you agree that you have a seal in accordance with 19 CFR 113.25 ▶			AFFIX SEAL or Check Box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CBP Identification Number:			☐ Check Box	
			Signature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any charge against the bond under any of the listed names is as though it was made by the principal(s).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they are bound to the same extent as if they executed a separate bond covering each set of conditions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the CBP regulations into this bond. If the surety fails to appoint an agent under Title 31, United States Code, Section 9306, surety consents to service on the Clerk of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r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here suit is brought on this bond. That clerk is to send notice of the service to the surety at: ▶				Mailing Address Requested by the Surety			
SURETY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Surety Number	Agent ID Number		☐ Check Box	
			Signature				

CBP Form 301 (06/12)

〈부록 2〉 미국 담보신청서 양식(2면)

Broker Filer Code: _____ Surety Reference Number: _____			
Principal Name: _____ CBP Identification Number: _____		AFFIX SEAL or Check Box By checking the box you agree that you have a seal in accordance with 19 CFR 113.25	
CO-PRINCIPAL			
<i>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i>	CBP Identification Number:		
	Signature		
		☐ Check Box	

SECTION III – List below the complete name of all trade names or unincorporated divisions that will be permitted to obligate this bond in the principal's name including their CBP Identification Number(s).			
CBP Identification Number	Name	CBP Identification Number	Name
		Total Number of Importer Names listed in Section III:	

CO-SURETY			
<i>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i>	Surety Number	Agent ID Number	
	Signature		
		☐ Check Box	

〈부록 3〉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1면)

CUSTOMS BOND INSTRUCTIONS FOR COMPLETION

All fields are requir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se instructions.

PAGE 1 CBP FORM 301

Broker Filer Code: Provide a number that identifies the filer of the bond, whether a Customs broker or surety agent or other party authorized to file the bond.

Surety Reference Number: A 9-digit self-generated surety reference number that a surety may opt to submit to CBP instead of a social security number to be used as a bond control number.

Execution Date: Provide the date that the last required signature of the surety or the bond principal is affixed to the bond.

- Continuous Bonds: Must be the same date or earlier than the effective date
- Single Transaction Bonds: Must be the same date or earlier than the transaction date

SECTION I

NOTE: The Single Transaction Bond or the Continuous Bond box must be checked as appropriate, but not both.

- Single Transaction Bond: Check box next to Single Transaction Bond and line out Continuous Bond (lining out is optional). Check only if the bond will cover a single transaction.
- Continuous Bond: Check box next to Continuous Bond and line out Single Transaction Bond (lining out is optional).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 secured by this bond (e.g., entry number, seizure number, etc.): For a Single Transaction only. Do not complete this box if you are filing a Continuous Bond. If this Single Transaction Bond covers Activity Code 1 or 1a, provide an entry number. If this Single Transaction Bond covers Activity Code 10, provide a seizure number. If this Single Transaction Bond covers Activity Code 16, provide unique ISF transaction number. If the Single Transaction Bond covers Activity Codes 1 and 16 (a unified filing), provide an entry number and a unique ISF transaction number. For any other activity code for which a Single Transaction Bond is allowed, you may provide an identifying number.

Transaction Date: If this is a single transaction bond, provide the date the transaction occurs, if known.

- Single Transaction Bond: Required field
 - Activity Code 1, 1a, 3, 5, 6, 7, 8, 9, 10
 - If known, enter date of transaction
 - If not known, transaction due date would be the execution date
 - Activity Code 16
 - Enter date of ISF transmission
- Continuous Bond: Not applicable, leave blank

Port Code: Provide the 4-digit code of the Port where the single transaction is to occur. Leave blank for continuous bonds.

Effective Date: For a continuous bond only. Provide the date that transactions under the continuous bond may begin to be accepted by CBP.

- The effective date must be the same or after the execution date

〈부록 4〉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2면)

SECTION II Activity Code: Check the appropriate Activity Code. Only one (1) box may be checked, except 3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3. Filers may opt to line out all unused activity codes. For Airport Security Bonds, check continuous and Activity Code 11. NOTE: Do not check boxes 12, 14, 15, or 17. Until further notice, this Form will not be used for those Activity Codes. Separate bonds must be filed. For Activity Code 12, see Appendix B to Part 113 of the CBP Regulations (19 CFR Part 113). For Activity Code 17, see the Notice of Specific Instruction, Customs Bulletin and Decisions, Vol. 40, No. 52, December 20, 2006, at page 7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rine Terminal Operator Bond. For Activity Codes 14 and 15, see the Port Director at the port in which the bond is to be filed. • Limit of Liability: Provide a number indicating the amount of the bond next to the activity code checked. The amount must be in whole dollars (always round up if there are cents for a Single Transaction Bond). • Enter "N/A" in all other Limit of Liability areas next to the lined out activity codes. (This is optional) PRINCIPAL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Provide the full name and legal description (i.e. corporation, partnership, individual, etc.) of the bond principal, a physical address (not a P.O. Box), and the state of incorporation, if applicable. For Continuous Bonds: If a limited partnership, provide a copy of the partnership agreement. If a general partnership, provide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ners on the bond form (e.g., A general partnership comprised of <name>, <name>, etc.) CBP Identification Number: Provide the CBP identification number filed pursuant to 19 CFR 24.5. Whe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is used, the two-digit suffix code must be included and an eleven-digit number must be provided. Signature: Provide the signature of a party authorized to bind the principal to the bond contract. The name and title (or Attorney in Fact) of the party signing the bond must be typed in this box also. If Attorney in Fact is signing the bond, the Company Name of the Attorney in Fact must be typed in this box. SEAL: Principal must determine if a seal is required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bond is executed. A checked box indicates a seal is affixed or submitted electronically to CBP as per 19 CFR 113.25. An unchecked box is an acknowledgment that no seal is required. Mailing Address Requested by the Surety: Provide a mailing address where the surety may receive notice of service. SURETY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If applicable provide the full surety name as it is set forth in the Treasury Listing of Approved Suretie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 and a physical address. If an individual surety, provide name and legal description of the surety, and a physical address. Surety Number: Provide the 3-digit identification code assigned by CBP to a surety company. Agent ID Number: Provide an identification number as identified by the surety granting such power of attorney. If an individual, a social security number may be provided, but a CBP-assigned number may also be used. Signature: Provide the signature of a party authorized to bind the surety to the bond contract. The name and title (or Attorney in Fact) of the party signing the bond must be typed in this box also. SEAL: Surety must determine if a seal is required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bond is executed. A checked box indicates a seal is affixed or submitted electronically to CBP as per 19 CFR 113.25. An unchecked box is an acknowledgment that no seal is required.
--

〈부록 5〉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3면)

PAGE 2 CBP FORM 301 If there is no substantive information on page 2 of the CBP 301 form, it need not be filed with CBP (Single Transaction or Continuous Bonds). Substantive information is limited to Co-Principal, Section III Divisions/Users, and Co-Surety. If page 2 is required, the four header data items (Broker Filer Code, Surety Reference Number, Principal Name, and CBP Identification Number) must be provided and identical to those fields on page 1. CO-PRINCIPAL Follow the same instructions as for the principal. SECTION III <u>List the complete name of all trade names or unincorporated divisions that will be permitted to obligate the bond in the principal's name including their CBP identification numbers:</u> Provide the complete name for each entity listed (e.g., ABC Company DBA 123 Company.) If the identification number is based upon an EIN, the number must match the base number (the first nine digits of a principal's identification number on the bond). Total Number of Importer Names Listed in Section III: Provide total number of entities listed. If none, enter a 0 (zero). Do not include the main principal or any co-principals in the total number of Section III users. CO-SURETY Follow the same instructions as for the surety. OTHER INSTRUCTIONS If a bond has more than two (2) co-principals, a CBP Form 301A must be used. Note that co-principals cannot be added by rider. The bond must be terminated and replaced to add (or delete) a co-principal. For bond conditions, refer to Part 113, Subpart G, CBP regulations and the Appendices to that Part. <u>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u>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50. The estimated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u>Privacy Act Statement:</u> The following notice is given pursuant to section 7(b) of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Furnishing the information of this form,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mandatory. The primary use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to verify, in the CBP Automated System, at the time an agent submits a CBP bond for approval that the individual was granted a Corporate Surety Power of Attorney by the surety company. Section 7 of the Act of July 30, 1947, chapter 390, 61 Stat. 646, authorizes the collection of this information.
--

〈부록 6〉 담보허가서 예시

9911EP252

08/02/2011

**PROCESSED September 13, 2011
REVENUE DIVISION ~ TMS**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ort Location: 9900 - NFC

RE: Application for U.S. Customs Bond, CBP-301

Dear Sir or Madam,

As provided in Section 113 of the CBP Regulations we are making this bond application for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 with importer number 06-12202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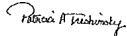
The total amount of duties, taxes and fees paid during the last 12 months was approximately : \$3,552,599

The estimated amount of duties, taxes and fees that will be paid for the next 12 months is : \$3,552,599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merchandise to be imported is:

VEH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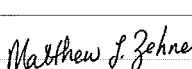
I certify that the factu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accurate and any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based upon estimates is based upon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date of this
application.



PATRICIA A. TRESHINSKY - SDV USA INC.
Attorney-In-Fact
Filer Code: 408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A DELAWARE CORPORATION)
9920 IRVINE CENTER DR
IRVINE, CA 92618-4357
IMPORTER NUMBER: 06-122022200

〈부록 7〉 담보허가서 예시(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50 Exp. 12-31-2010	
CUSTOMS BOND				9911EP252	
19 CFR Part 113				FILE REFERENCE	
In order to secure payment of any duty, tax or charge and compliance with law or regulation as a result of activity covered by any condition referenced below, we, the below named principal(s) and surety(ies), bind ourselve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amount or amounts, as set forth below.				Execution Date 08/02/2011	
SECTION I - Select Single Transaction OR Continuous Bond (not both) and fill in the applicable blank spaces.					
☐	SINGLE TRANSACTION BOND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 secured by this bond (e.g., entry no., seizure no., etc.)	Date of transaction	Port code	
☒	CONTINUOUS BOND	Effective date 10/01/2011	This bond remains in force for one year beginning with the effective date and for each succeeding annual period, or until terminated. This bond constitutes a separate bond for each period in the amounts listed below for liabilities that accrue in each period.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is bond must be conveyed within the period and manner prescribed in the Customs Regulations.		
SECTION II - This bond includes the following agreements ¹ (Check one box only, except that, 1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1, and 3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3. Line out all other parts of this section that are not used.)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ustoms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ustoms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 1	Importer or broker.....113.62	\$800,000	☐ 5	Public Gauges.....113.67	N/A
☐ 1a	Drawback Payment Refunds.....113.65		☐ 6	Rules for Products Taking Retra Importation (Single Entry Only).....113.68	N/A
☐ 2	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includes bonded carriers, freight forwarders, cartmen and lightermen, all classes of warehouses, container station operators).....113.63	N/A	☐ 7	Bill of Lading (Single Entry Only).....113.69	N/A
☐ 3	International Carrier.....113.64	N/A	☐ 8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 (Single Entry Only).....113.70	N/A
☐ 3a	Insurance of International Traffic.....113.66	N/A	☐ 9	Neutrality (Single Entry Only).....113.71	N/A
☐ 4	Foreign Trade Zone Operator.....113.73	N/A	☐ 10	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 (Single Entry Only).....113.72	N/A
SECTION III - List below all tradenames or unincorporated divisions that will be permitted to obligate this bond in the principal's name including their CBP Identification Number(s). ³ (If more space is needed, Use Section III (Continuation) on back of form.)					
Importer Number	Importer Name	Importer Number	Importer Name		
N/A	N/A				
Total number of importer names listed in Section III: 0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any charge against the bond under any of the listed names is as though it was made by the principal(s).		If the surety fails to appoint an agent under Title 6, United States Code, Section 7, surety consents to service on the Clerk of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r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here suit is brought on this bond. That clerk is to send notice of the service to the surety at:		Mailing Address Requested by the Surety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they are bound to the same extent as if they executed a separate bond covering each set of conditions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the Customs Regulations into this bond.				American Alternative Insurance Corporation c/o Roanoke Group 1475 E. Woodfield Road, Suite 500 Schaumburg, IL 60173	
PRINCIPAL ⁴	Name and Address ⁶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A DELAWARE CORPORATION) 9920 IRVINE CENTER DR IRVINE, CA 92618-4357	Importer No. ³ 06-122022200	SIGNATURE ⁵  PATRICIA A. TRESHINSKY - SOVUSA INC. Attorney-in-Fact	SEAL	
PRINCIPAL ⁴	Name and Address	Importer No. ³	SIGNATURE ⁵	SEAL	
SURETY ^{4,5}	Name and Address ⁶ AMERICAN ALTERNATIVE INSURANCE CORPORATION (A DELAWARE CORPORATION) 555 COLLEGE ROAD EAST PRINCETON, NJ 08540-6616	Surety No. ⁷ 036	SIGNATURE ⁵  Matthew L. Zehner Attorney-in-Fact		
SURETY ^{4,5}	Name and Address ⁶	Surety No. ⁷	SIGNATURE ⁵	SEAL	
SURETY AGENTS	Name ⁸ MATTHEW L. ZEHNER	Identification No. ⁹ 005-72-3503	Name ⁸	Identification No. ⁹	

PART I - CBP

CBP Form 301 (06/96)

〈부록 8〉 담보허가서 예시(계속)

Note: Turn carbons over before writing on back of form.

SECTION III (Continuation)

Importer Number	Importer Name	Importer Number	Importer Name
			9911EP252

WITNESSES

Two witnesses are required to authenticate the signature of any person who signs as an individual or partner; however a witness may authenticate the signatures of both such non-corporate principals and sureties. No witness is needed to authenticate the signature of a corporate official or agent who signs for the corporation.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n the PRESENCE OF:

Name and Address of Witness for the Principal

Name and Address of Witness for the Surety

SIGNATURE:

Name and Address of Witness for the Principal

SIGNATURE:

Name and Address of Witness for the Surety

SIGNATURE:

SIGNATURE:

EXPLANATIONS AND FOOTNOTES

- The CBP Bond Number is a control number assigned by CBP to the bond contract when the bond is approved by an authorized CBP official.
- For all bond coverage available and the language of the bond conditions refer to Part 113, subpart G, Customs Regulations.
- The Importer Number is the CBP identification number filed pursuant to section 24.5, Customs Regulations. Whe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used the two-digit suffix code must be shown.
- If the principal or surety is a corporation, the name of the State in which incorporated must be shown.
- See witness requirement above.

- Surety Name, if a corporation, shall be the company's name as it is spelled in the Surety Companies Annual List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

- Surety Number is the three digit identification code assigned by CBP to a surety company at the time the surety company initially gives notice to CBP that the company will be writing CBP bonds.

- Surety Agent is the individual granted a Corporate Surety Power of Attorney, CBP 5297, by the surety company executing the bond.

- Agent Identification No. shall be the individual's Social Security number as shown on the Corporate Surety Power of Attorney, CBP 5297, filed by the surety granting such power of attorney.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The Paperwork Reduction Act says we must tell you why we are collecting this information, how we will use it, and whether you have to give it to us. We ask for this information to carry out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e need it to ensure that persons transacting business with CBP have the proper bond coverage to secure their transactions as required by law and regulation. Your response is required to enter into any transaction in which a bond is a prerequisite under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estimated averag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16 minutes per respondent or recordkeeper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Comments concerning the accuracy of this burden estimate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directed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formation Services Branch, Washington DC 20228, an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perwork Reduction Project (1651-0050), Washington, DC 20503.

Privacy Act Statement: The following notice is given pursuant to section 7(b) of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Furnishing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mandatory. The Primary use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to verify, in the CBP Automated System, at the time an agent submits a CBP bond for approval that the individual was granted Corporate Surety Power of Attorney by the surety company. Section 7 of Act of July 30, 1947, chapter 390, 61 Stat. 648, authorizes the collection of this information.

CBP Form 301 (05/98) (Back)

〈부록 9〉

Approved OMB NO. 1651-0064
Exp. 09-30-2012
See back of form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MPORTER ID
INPUT RECORD**

19 CFR 24.6

1. Type of Action (Mark all applicable)

☒ Notification of Importer's Number ☒ Change of Address*

☒ Change of Name* ☒ Check here if you also want your address updated in the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

*NOTE: If continuous bond is on file, a bond rider must accompany this change document.

2. Importer Number (Fill in one format):

2A. IRS Number 06-122022200	2B. Social Security Number
---------------------------------------	-----------------------------------

2C. Check here if requesting a CBP-assigned number and indicated reason(s). (Check all that apply)

☐ I have no IRS No. ☐ I have no Social Security No. ☐ I have not applied for either number. ☐ I am not a U.S. resident.

2D. Customs-Assigned Number **9911EP252**

3. Importer Name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PROCESSED September 13, 2011**

4. DIV/AKA/DBA ☐ DIV ☐ AKA ☐ DBA **5. DIV/AKA/DBA Name** **REVENUE DIVISION ~ TMS**

6. Type
☒ Corporation ☐ Partnership ☐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 U.S. Government ☐ State/Local Governments ☐ Foreign Governments

7. Importer Mailing Address (2 32-character lines maximum)
1 PREMIER PLACE

8. City IRVING	9. State Code CA	10. Zip 92618
--------------------------	----------------------------	-------------------------

11. Country ISO Code (Non-U.S. Only)
US

12. Importer Physical Location Address (2 32-character lines maximum; see instructions)
9920 IRVINE CENTER DR

13. City IRVINE	14. State Code CA	15. Zip 92618-4357
---------------------------	-----------------------------	------------------------------

16. Country ISO Code (Non-U.S. Only)
US

17A. Has Importer ever been assigned a CBP Importer Number using the same name as in Block 3?
☒ No ☐ Yes (List number(s) and/or name(s) in Block 17C.)

17B. Has the importer ever been assigned a CBP Importer Number using a name different from that in Block 3?
☒ No ☐ Yes (List number(s) and/or name(s) in Block 17C.)

17C. If "Yes" to 17A and/or 17B, List number(s) and/or names

18. Printed or Typed Name and Title
Attorney-In-Fact

19. Telephone No. including Area Code
978-532-2101

20. Signature
X 

21. Date
08/02/2011

22. Broker Use only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in is correct; that if my Social Security Number is used it is because I have no IRS Employer Number, that if my CBP assigned number is used it is because I have neither a Social Security Number nor an IRS Employer Number, that if none of these numbers is used, it is because I have none, and my signature constitutes a request for assignment of a number by CBP.

〈부록 10〉

Conditional Termination and New Bond Request
Broker/Principal Request Per 19 CFR 113.27(a)
 (At least 10 business days notice is required)

Date: 08/02/2011

CBP Assigned Bond Number: 9908U6426

Principal Name: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Importer Number: 06-122022200

Activity Code: 001

Surety Name and Surety Code: WASHINGTON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891

Primary Termination Date Requested: 09/30/2011

It is respectfully requested that the above referenced bond be replaced with a new bond, effective 10/01/2011
 with surety AMERICAN ALTERNATIVE INSURANCE CORPORATION 036

Please see the enclosed CBP 301, application letter, and any supplemental documents for this replacement bond request.

Conditional Termination Requested

In the event the enclosed replacement bond can not be made effective on the day after the Primary Termination Date as specified above, we request CBP forbear from implementing this termination on such date, and instead implement this termination on the date before the replacement bond is ready to be made effective. By its seal and signature below, the surety consents to this request.

WASHINGTON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891

STEVE CALAMIA
 Attorney-in-Fact
 333-64-5085



Respectfully,

ASTON MARTIN LAGONDA OF NORTH AM

Principal Name (Company, Individual, etc.)

Signature

Printed or Typed Name of Signor and License Name, if signing as Attorney-in-Fact

Title of Signor

408

Filer Code, if applicable

Contact Information**Replacement Team - Pat Olsen**

Contact

Roanoke Group

AXV

Company

Filer Code, if applicable

847-969-8228

847-969-3275

Telephone

Fax

bondsource@roanoketrade.com

Email

Enclosures

CBP Representative:

CBP Termination Effective:

〈부록 11〉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8 포괄담보신청서(앞면)

COMPREHENSIVE GUARANTEE

I. Undertaking by the guarantor

1. The undersigned ⁽¹⁾
 resident at ⁽²⁾
 hereby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s, at the office of guarantee of
 up to a maximum amount of
 being 100 % / 50 % / 30 % ⁽³⁾ of the reference amount,

►⁽⁴⁾ in favour of the European Community comprising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Czech Republic,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Republic of Hungary, the Republic of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the Kingdom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celand, the Kingdom of Norway, the Swiss Confederation,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Republic of San Marino ⁽⁴⁾, any amount of principal ◀, further liabilities, expenses and incidentals, but not fines, for which the principal ⁽⁵⁾.

may be or become liable to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for debt in the form of duty and other charges applicable to the goods placed under the Community or common transit procedure.

2. The undersigned undertakes to pay upon the first application in writing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without being able to defer payment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the sums requested up to the limit of the abovementioned maximum amount, unless he or she or any other person concerned establishe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⁶⁾ the operation has ended. ◀

At the request of the undersigned and for any reasons recognised as valid,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defer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ayment the period within which he or she is obliged to pay the requested sums. The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granting this additional period, in particular any interest, must be so calculated that the amount is equivalent to what would be charg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on the money market or financial market in the country concerned.

This amount may not be reduced by any sums already paid under the terms of this undertaking unless the undersigned is called upon to pay a debt arising during a Community or common transit operation commenced before the preceding demand for payment was received or within 30 days thereafter.

3. This undertaking shall be valid from the day of its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The undersigned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payment of any debt arising during the Community or common transit operations covered by this undertaking and commenced before the date on which any revocation or cancellation the guarantee took effect, even if the demand for payment is made after that date.

〈부록 12〉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8 포괄담보신청서(뒷면)

4. For the purposes of this undertaking the undersigned gives his or her address for service in each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¹⁾:

Country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and full address
.....	
.....	
.....	
.....	
.....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at all correspondence and notices and any formalities or procedures relating to this undertaking addressed to or effected in writing at one of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shall be accepted as duly delivered to him or her.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places where he or she has an address for service.

The undersigned undertakes not to change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or, if he or she has to change one or more of those addresses, to inform the office of guarantee in advance.

Done at on

.....
(Signature) ⁽²⁾

II.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Office of guarantee

Guarantor's undertaking accepted on

.....
(Stamp and signature)

⁽¹⁾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²⁾ Full address.

⁽³⁾ Delete what does not apply.

⁽⁴⁾ Delete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or States (Andorra or San Marino) whose territory is not transited. The references to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Republic of San Marino shall apply solely to Community transit operations.

⁽⁵⁾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and full address of the principal.

⁽⁶⁾ If in the law of the country, there is no provision for address for service the guarantor shall appoint, in this country, an agent authorised to receive any communications addressed to him and the acknowledgement in the second subparagraph and the undertaking in the fourth subparagraph of paragraph 4 must be made to correspond. The courts of the places in which the addresses for service of the guarantor or of his agents are situated shall have jurisdiction in disputes concerning this guarantee.

⁽⁷⁾ The person signing the document must enter the following by hand before his or her signature: "Guarantee for the amount of, the amount being written out in letters.

〈부록 13〉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9 개별담보신청서(앞면)

Individual guarantee

1. Undertaking by the guarantor

1. The undersigned ⁽¹⁾

resident at ⁽²⁾

hereby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s, at the office of guarantee of

up to a maximum amount of

►⁽³⁾ in favour of the European Community comprising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Czech Republic,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Republic of Hungary, the Republic of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the Kingdom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celand, the Kingdom of Norway, the Swiss Confederation,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Republic of San Marino ⁽³⁾, any amount of principal ◀, further liabilities, expenses and incidentals, but not fines, for which the principal ⁽⁴⁾,

may be or become liable to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for debt in the form of duty and other charges applicable to the goods described below placed under the Community or common transit procedure from the office of departure of

to the office of destination of

Goods description:

2. The undersigned undertakes to pay upon the first application in writing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oint 1 and without being able to defer payment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the sums requested unless he or she or any other person concerned establishe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⁵⁾the operation has ended.◀

At the request of the undersigned and for any reasons recognised as valid,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defer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ayment the period within which he or she is obliged to pay the requested sums. The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granting this additional period, in particular any interest, must be so calculated that the amount is equivalent to what would be charg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on the money market or financial market in the country concerned.

3. This undertaking shall be valid from the day of its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The undersigned shall remain liable for payment of any debt arising during the Community or common transit operation covered by this undertaking and commenced before any revo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guarantee took effect, even if the demand for payment is made after that date.

〈부록 14〉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9 개별담보신청서(뒷면)

4. For the purpose of this undertaking, the undersigned gives his or her address for service in each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¹⁾:

Country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and full address
.....	
.....	
.....	
.....	
.....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at all correspondence and notices and any formalities or procedures relating to this undertaking addressed to or effected in writing at one of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shall be accepted as duly delivered to him or her.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places where he or she has an address for service.

The undersigned undertakes not to change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or, if he or she has to change one or more of those addresses, to inform the office of guarantee in advance.

Done at on

.....
(Signature) ⁽²⁾

II.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Office of guarantee

Guarantor's undertaking accepted on to cover the Community / common
transit operation effected under transit declaration No of ⁽³⁾

.....
(Stamp and signature)

⁽¹⁾ Surname and forename or name of firm.

⁽²⁾ Full address.

⁽³⁾ Delete the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or States (Andorra or San Marino) whose territory is not transited. The references to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Republic of San Marino shall apply solely to Community transit operations.

⁽⁴⁾ Surname and forename, or name of firm and full address of the principal.

⁽⁵⁾ If, in the law of the country, there is no provision for address for service the guarantor shall appoint, in this country, an agent authorised to receive any communications addressed to him and the acknowledgement in the second subparagraph and the undertaking in the fourth subparagraph of paragraph 4 must be made to correspond. The courts of the places in which the addresses for service of the guarantor or of his agents are situated shall have jurisdiction in disputes concerning this guarantee.

⁽⁶⁾ The person signing the document must enter the following by hand before his or her signature: "Guarantee for the amount of ..."; the amount being written out in letters.

⁽⁷⁾ To be completed by the office of departure.

〈부록 15〉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50 전표양식의 개별담보신청서(앞면)

Individual guarantee in the form of vouchers

I. Undertaking by the guarantor

1. The undersigned ⁽¹⁾

resident at ⁽²⁾

hereby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s, at the office of guarantee of

► ⁽⁴⁾ in favour of the European Community comprising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Czech Republic,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Republic of Hungary, the Republic of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the Kingdom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celand, the Kingdom of Norway, the Swiss Confederation,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Republic of San Marino ⁽³⁾; any amount of principal ◀, further liabilities, expenses and incidentals, but not fines, for which the principal may be or become liable to the ► ⁽²⁾ above mentioned ◀ countries for debt in the form of duty and other charges applicable ► ⁽⁴⁾ to the goods placed under ◀ the Community or common transit procedure, in respect of which the undersigned has undertaken to issue individual guarantee vouchers up to a maximum of EUR 7 000 per voucher.

2. The undersigned undertakes to pay upon the first application in writing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without being able to defer payment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the sums requested, up to EUR 7 000 per individual guarantee voucher, unless he or she or any other person concerned establishe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 ⁽⁵⁾ the operation has ended. ◀

At the request of the undersigned and for any reasons recognised as valid,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defer beyond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ayment the period within which he or she is obliged to pay the requested sums. The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granting this additional period, in particular any interest, must be so calculated that the amount is equivalent to what would be charg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on the money market or financial market in the country concerned.

3. This undertaking shall be valid from the day of its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The undersigned shall remain liable for payment of any debt arising during any Community or common transit operations covered by this undertaking and commenced before any revo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guarantee took effect, even if the demand for payment is made after that date.

〈부록 16〉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50 전표양식의 개별담보신청서(뒷면)

4. For the purpose of this undertaking the undersigned gives his or her address for service ⁽¹⁾ in each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Country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and full address
.....	
.....	
.....	
.....	
.....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at all correspondence and notices and any formalities or procedures relating to this undertaking addressed to or effected in writing at one of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shall be accepted as duly delivered to him or her.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places where he or she has an address for service.

The undersigned undertakes not to change his or her addresses for service or, if he or she has to change one or more of those addresses, to inform the office of guarantee in advance.

Done at on

.....
(Signature) ⁽²⁾

II. Acceptance by the office of guarantee

Office of guarantee

Guarantor's undertaking accepted on

.....
(Stamp and signature)

⁽¹⁾ Surname and forenames, or name of firm.

⁽²⁾ Full address.

⁽³⁾ Only for Community transit operations.

⁽⁴⁾ If, in the law of the country, there is no provision for address for service the guarantor shall appoint, in this country, an agent authorised to receive any communications addressed to him and the acknowledgement in the second subparagraph and the undertaking in the fourth subparagraph of paragraph 4 must be made to correspond. The courts of the places in which the addresses for service of the guarantor or of his agents are situated shall have jurisdiction in disputes concerning this guarantee.

⁽⁵⁾ The signature must be preceded by the following in the signatory's own handwriting: 'Valid as guarantee voucher'.

관세연구 12-03

관세 채권 확보와 수입자 보호 제도에 관한 검토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미영 · 김수영 · 양지영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0-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